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지역 외국인 투자관련 기업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지방자치전공  
박종명

2019年 8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for  
foreign investment-related companies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Jong-Myoung Park

(Supervised By professor Kyung-Su Hwang)

This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ocial Science

2019.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 제주지역 외국인 투자관련 기업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지도교수 황 경 수

박 종 명

이 논문을 행정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8월

박종명의 행정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강 영 훈



위 원

박 병 옥



위 원

황 경 수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2019년 8월



#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1
1. 연구의 내용 .....	1
2. 연구의 방법 .....	2
제2장 외국투자기업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	3
제1절 외국투자기업관련 용어 및 이론 .....	3
1.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보호 .....	3
2. 체류 자격과 외국인 투자이민제도 .....	3
제2절 국내 관련법률 및 규정 .....	4
1. 외국인투자 촉진 .....	4
2. 조세특례제한법 .....	4
3.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	5
4. 기획재정부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 .....	5
5.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투자 통합공고 .....	5
6.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과 조례의 규정 .....	6
7. 부동산투자이민제도 .....	6
제3절 외국인투자 관련 국제협약 .....	10
1. 대한민국과 중국과의 협약 .....	11
2. 대한민국과 중국과 일본과의 협약 .....	13
3. 국제조약체결을 위한 국내절차 .....	14
제4절 분석의 틀 .....	15
1. 제주도내 외국인투자기업 사례분석의 틀 .....	15

2. 문제점도출을 위한 인터뷰 분석의 틀 .....	16
<b>제3장 사례분석 및 인터뷰 분석 .....</b>	<b>17</b>
제1절 제주도지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현황 .....	17
제2절 안정적 투자를 위한 지방정부 대응태도에 대한 인터뷰 .....	18
제3절 투자기업별 투자내용과 문제점 분석 .....	19
1. 버자야 그룹의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투자 .....	19
2. 녹지그룹 헬스케어타운 및 녹지병원의 투자 .....	24
3. 제주중국성개발의 무수천 유원지 투자 .....	31
4. 시민사회 단체와 행정기관의 입장에 대한 인터뷰 .....	35
5. 함의 .....	38
<b>제4장 외국인 투자관련 기업의 인식전환을 위한 제도개선 .....</b>	<b>40</b>
제1절 제도적 측면의 정책제언 .....	40
1. 초기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제도 개선 .....	40
2. 제도적 일관성을 위한 정책제언 .....	40
3. 법률적 대응을 위한 정책제언 .....	40
제2절 정부차원 의사결정과 인허가 결정관련 정책제언 .....	41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의사결정 창구의 일원화 .....	41
2. 인허가관련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 확보 .....	42
제3절 조세제도와 관련 정책제언 .....	42
<b>제5 결론 .....</b>	<b>44</b>
참고문헌 .....	46
부록 1.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협약	
부록 2. 대한민국 투자보장협정 체결 현황(2019)	

# 표 목 차

<표 1> 부동산투자이민제 등에 관한 고시 [법무부고시 제2015-317호] .....	10
<표 2>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12
<표 3> 대한민국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및 일본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원활화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13
<표 4> 국제조약체결을 위한 국내절차 .....	14
<표 5> 개발사업시행승인고시 공문 .....	37

# 그림 목 차

<그림 1> 사례분석을 위한 분석의 요소와 틀 .....	15
<그림 2> 인터뷰 분석을 위한 분석의 요소와 틀 .....	16
<그림 3> 제주도 외국인 투자사업 현황 .....	17
<그림 4>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감도 .....	20
<그림 5> 대법원 판결 후 방치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2015.03) .....	22
<그림 6> 녹지국제병원 조감도 .....	24
<그림 7> 녹지국제병원 준공 후 허가 취소된 현장(2018.04) .....	26
<그림 8>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발표 .....	29
<그림 9> 무수천 유원지 조감도 .....	31

<국문초록>

## 제주지역 외국인 투자관련 기업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지도교수 황경수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지방자치전공

제주도내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의 동기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외투기업의 사업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고, 긍정적인 점은 확대하며, 나아가 제주지역 외국인 투자관련 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제주도에 투자된 외국인 투자기업은 총23개 사업으로, 공사 중단 3개소, 절차이행 7개소, 일부운영 13개소가 있으며, 공사 중단 3개소 중 2개소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 혹은 외국인 직접투자(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란 외국인이 경영참가와 기술제휴 등 국내기업과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부동산투자이민제 등을 통해 현금 이외에도 자본채,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과 국내부동산, 외국상장기업의 주식 등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인정하는 출자목적물의 투자를 모두 포함한다.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구성된다. 첫째, 외투기업 유치제도와 관련법을 분석한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외투기업의 활동과 공부정적 문제, 그 원인과 법 제도적 근거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외투기업관련 국제협약 분석이다. 국내법으로 적용하는 것과 동등한 국제협약의 내용을 분석하여, 국내의 정책과 제도에 대한 해석의 근거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제주도의 사례를 분석한다. 현재 진행 중인 상태의 기술과 문제점, 외투기업들의 요구사항들을 파악할 것이다. 넷째, 제주지역의 시민사회 단체와 제주도 행정당국의 입장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에 따른 행정절차 및 지역사회의 요구사항을 파악할 것이다. 다섯째, 제주도의 사례분석을 통한 함의를 도출하게 된다. 이는 국내법, 그리고 국제협약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차이에 대한 해석을 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제도와 사례분석의 결과, 나타나는 차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정책제언을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제주에서 진행되는 외국인 관련 투자기업의 긍정적 역할을 확대하고, 투자기업은 지역사회에서의 요구사항, 행정당국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역사회와 더불어 상생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의 활성화와 이미 투자한 기업의 안정적 사업진행을 위한 정책과 제도개선에 미력한 힘이나마 기여하고자 한다.

**주제어: 외국인투자기업. 부동산투자이민제. 개발사업. 국제협약. 조세심판**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내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의 동기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외투기업의 사업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고, 긍정적인 점은 확대하며, 나아가 제주지역 외국인 투자관련 기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본 연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 혹은 외국인 직접투자(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란 외국인이 경영참가와 기술제휴 등 국내기업과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주식투자(Portfolio 투자)와는 다른 개념으로 외국인직접투자는 현금 이외에도 자본재,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과 국내부동산, 외국상장기업의 주식 등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인정하는 출자목적물의 투자를 이야기한다.

##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1.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구성된다. 첫째, 외투기업 유치제도와 관련법을 분석한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외투기업의 활동과 공부정적 문제, 그 원인과 법 제도적 근거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외투기업관련 국제협약 분석이다. 국내법으로 적용하는 것과 동등한 국제협약의 내용을 분석하여, 국내의 정책과 제도에 대한 해석의 근거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제주도의 사례를 분석한다. 현재 진행 중인 상태의 기술과 문제점, 외투기업들의 요구사항들을 파악할 것이다. 넷째, 제주도의 사례분석을 통한 함의를 도출하게 된다. 이는 국내법, 그리고 국제협약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차이에 대한 해석을 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제도와 사례분석의 결과, 나

타나는 차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정책제언을 한다.

## 2. 연구의 방법

연구방법론으로는 크게 네 가지를 활용한다. 첫째는 문헌자료를 통해 국내법, 국제협약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다. 둘째, 여론과 언론 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 신문을 분석한다. 셋째, 인터뷰기법을 활용한다. 외투기업들의 임직원 등을 직접 인터뷰하여 외투기업들의 느끼는 문제점과 바람을 정리한다. 넷째, 외투기업관련 제도와 성공사례 분석의 방법을 활용한다. 이는 정책제언 등을 도출하기 위한 작업이다.

## 제2장 외국인 투자기업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 제1절 외국투자기업관련 용어 및 이론

#### 1.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보호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정의) ①항의 1에 따라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및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정의) ①항의 6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외국인이 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정의) ①항 4호 가목에서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법 제3조의 ①항에서는 대외송금 보장규정을 두고 있다.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주식 등의 매각 대금, 차관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는 송금 당시 외국인투자의 신고내용 또는 허가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법 제3조의 ②항에서는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과 같은 대우를 받도록 하고 있다.

#### 2. 체류 자격과 외국인 투자이민제도

투자이민제도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측면에서 만든 제도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근거는 체류 자격과 관련하여 체류규제요건을 완화 또는 면제하는 제도로 출발하였다.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두 가지의 유형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첫째는 일반체류자격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 자격이다. 둘째는 영주자격이다.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인 바, 이 투자이민제도는 영주자격과 관련한 제도이다.

## 제2절 국내 관련법률 및 규정

### 1. 외국인투자 촉진

이 법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의 구성은 외국인투자 절차,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외국인투자지역지정, 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 등을 골자로 만들어진 법령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와 같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조세특례제한법과 더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한 조세감면 및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만든 법률이다.

### 2. 조세특례제한법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동법 제121조의 12, 동법시행령 제116조의 2등 투자진흥지구지정을 통한 조세감면이 폭넓게 진행되었다.

### 3.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을 살펴보면 법제3조(업종분류의 기준), 제9조(투자신고 전 사전확인 요청시 필요한 서류 등) 제5조(외국인투자 제한업종)등 실제 외국인투자가 시작되는 시점에 필요한 절차상의 규정이다.

### 4. 기획재정부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내지 제121조의7 및 동법시행령 제116조의2 내지 제116조의13, 동법시행규칙 제51조 내지 제51조의3, 동법 제121조의 3(관세 등의 면제), 동법 제121조의 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5.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투자 통합공고

이 공고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0항에 따라 법 이외의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통합 공고하여 외국인투자 제한 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외국인투자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388호).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내지 제8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7조제2항, 「외국환거래법」 제18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 등 타 법령 등에서의 외국인투자 제한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이다.

## 6.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과 조례의 규정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1조제3항 및 제122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24조의5(투자이민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등 제주도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법무부 고시 제2013-138호와 같이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의 정책을 근거로 활발한 외국인투자가 진행되었다.

## 7.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외국인이 투자대상국에서 법으로 지정한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를 일정 기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투자대상국에 거주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기준금액 등의 기준에 따라 외국인이 정해진 지역의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F-2)을 부여하고, 일정기간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경우 영주자격(F-5)을 부여한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이 제도에 따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지정된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최초 3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거주할 수 있으며, 투자자 포함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도 거주 자격을 부여받는다. 투자상태를 5년 동안 유지하고, 결격 사유가 없으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진다.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제주도 지역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였다. 2002년에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선정된 이후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2007년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의 예래단지 투자를 제외하고는 대규모 투자유치 실적이 없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실시하였다. 이후 정부 지원이 많지 않은 여러 지역에서 제도 도입을 건의함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확장되었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시행 2015. 11. 1.] [법무부고시 제2015-317호, 2015. 10. 30., 일부개정]

법무부(체류관리과), 02-2110-4058

1.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수하리 일원]

가. 투자대상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승인하여 지정한 '대관령알펜시아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③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령(168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 ※ 위 법령에 따른 별장은 2018년 5월 1일부터는 거주(F-2)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상에서 제외됨
-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5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2.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

[인천광역시 중구, 연수구, 서구 일원]

가. 투자대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지정·승인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제8호 ‘마’목) 및 지식경제부 고시(제2012-323호)에 따라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주택
- ④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령(168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 ※ 위 법령에 따른 별장은 2018년 5월 1일부터는 거주(F-2)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상에서 제외됨
- 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 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는 주택 (단, '14.9.30. 현재 및 '15.9.30.까지 해당 요건을 갖춘 주택에 한함)
  - 분양계약이 해제된 주택 및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명의로 최초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주택도 대상에 포함
  -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투자이민으로 인한 거주(F-2) 체류자격을 받는 시점은 임대기간 종료 후 공실이 된 때로 함
  - 나. 투자금액 : 7억 원 이상
  - 다. 시행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 3. 제주특별자치도

#### 가. 투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고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단지 및 관광지’ 지정을 받은 사업지역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
-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③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령(168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 ※ 위 법령에 따른 별장은 2018년 5월 1일부터는 거주(F-2)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상에서 제외됨
-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5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5년 11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라. 경과규정(신설)

① 2016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고시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에 따른 도지사의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얻은 경우 이 고시에 따른 투자대상 부동산으로 본다.

#### 4. 전남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전남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일원]

가. 투자대상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한 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령(168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 위 법령에 따른 별장은 2018년 5월 1일부터는 거주(F-2)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상에서 제외됨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5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 5.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 동부산관광단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1동 일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연화·대변·당사·청강리 일원]

가. 투자대상

관광진흥법 제52조, 제7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의 승인하여 지정한 ‘해운대관광특구’ 중 ‘해운대관광리조트’ 및 ‘동부산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③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령(168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 ※ 위 법령에 따른 별장은 2018년 5월 1일부터는 거주(F-2)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상에서 제외됨
-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 나. 투자금액 : 해운대관광리조트 7억 원 이상, 동부산관광단지 5억 원 이상
  - 다. 시행기간 : 2013년 5월 20일부터 2018년 5월 19일까지

6. 경기 파주 통일동산 지구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범흥리 일원]

가. 투자대상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舊 특정지역 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통일동산’ 내의 부동산 중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 나. 투자금액 : 5억 원 이상
  - 다. 시행기간 : 2015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표 1> 부동산투자이민제 등에 관한 고시 [법무부고시 제2015-317호]

**제3절 외국인 투자 관련 국제협약 내용**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 이래 다른 나라들과 경제·사회·문화·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조약을 체결해 왔다. 정부 수립 후 2018년 12월까지 우리나라가 체결·발효한 조약은 총 3,288건(양자 2,585건, 다자 703건)입니다. 이 중 1960년 이전 13년간 발효된 조약은 102건(양자 66건, 다자 36건)에 불과한 반면 2011~2018년 까지 8년 간 발효된 조약은 544건(양자 452건, 다자 92건)으로 2000년대 들어 조약 체결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외교부 홈페이지 조약체결현황, 2019.06.20.)

특이한 점은 일반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조약의 체결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

다는 점이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이중과세방지협정, 사회보장 협정, 투자 보장협정, 형사사법 공조 및 범죄인인도조약 등은 경제·사회·사법 등 제반 분야에 있어 우리 국민들의 이익을 증진하고 사법 분야 공조 강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1. 대한민국과 중국과의 협약

이는 2007년 9월 8일 시드니에서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이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두 차례 국가 간 국제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협약의 핵심 내용은 ‘일단 허용된 투자에 부여되는 대우는 최초의 투자가 행해졌을 당시 부여된 대우보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불리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2007년 9월 8일 시드니에서 서명(조약번호 1872)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 경제 및 통상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자를 보다 증진하기를 희망하고, 투자 및 투자와 관련된 사업 활동에 대하여 호의적인 대우와 보호를 부여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 안에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하는 투자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를 의도하며,

중 략

제 3 조 투자의 대우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 안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에 대하여 투자의 확장·운영·관리·유지·사용·향유·판매 또는 그 밖의 처분(이하 “투자 및 영업 활동”이라 한다)에 관하여 유사한 상황에서 자국의 투자자와 그

들의 투자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이하 “내국민 대우”라 한다)를 부여

2. 제2조 제3항 및 제3조 제1항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안에서 유지되는 현행의 비합치조치 또는 개정되기 이전의 비합치조치의 비합치 효과를 증가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향후 모든 개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일단 허가된 투자에 부여된 대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원래의 투자가 행해진 시점에 부여된 대우보다 제한적이지 않아야 한다.

<b>상태</b>	발효	
<b>체결대상국가</b>	CHINA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b>분야</b>	투자보장	
<b>조약명</b>	<b>국문</b>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전면개정)
	<b>영문</b>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b>기타언어</b>	
<b>조약문보기</b>	<input type="button" value="국문"/> <input type="button" value="영문"/>	
<b>국무회의심의</b>	2007년 05월 29일 제 [23] 회	
<b>서명일</b>	2007년 09월 08일	
<b>서명장소</b>	시드니	
<b>국회동의</b>	불요	
<b>발효일</b>	2007년 12월 01일 (조약제1872호)	
<b>관보게재일</b>	2007년 11월 22일	

<표 2>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2. 대한민국과 중국과 일본과의 협약

이 협약은 2012년 5월 13일 북경에서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및 일본국정부간의 투자증진, 원활화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이다.

2012년 5월 13일 북경에서 서명

(한글번역문)

대한민국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및 일본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원활화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및 일본국 정부는,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및 일본국(이하 이 협정에서는 “체약당사자”라 한다) 간 경제 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투자를 보다 증진하기를 희망하고, 그 밖의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한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를 위해 안정적이고 유리하며 투명한 여건을 조성하기를 의도하며

중 약

### 제3조 내국민대우

1.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영역 내에서 다른 어떠한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에 대하여 투자활동과 관련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신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 제1항은 이 협정 발효일 에 각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유지되고 있는 현행의 비합치조치가 있다면, 이러한 비합치조치 또는 그 개정 혹은 수정이 개정 혹은 수정 직전에 가진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그러한 조치에 대한 모든 개정이나 수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일단 허용된 투자에 부여되는 대우는 최초의 투자가 행해졌을 당시 부여된 대우보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불리해서는 아니 된다.

<표 3> 대한민국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및 일본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원활화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3. 국제조약체결을 위한 국내절차

헌법 제6조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절차에 따라 체결된 조약은 공포를 거쳐서 비로소 국내법으로 수용,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 조약체결을위한국내절차

##### 1. 양자조약 체결절차

1. 1. 체결필요성 검토 (관계부처 협의)
1. 2. 가서명
1. 3. 법제처 심사
1. 4.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1. 5. 대통령 재가
1. 6. 서명 (또는 각서교환)
1. 7. 국회 비준동의 (필요시)

헌법 제60조 1항에 해당되는 조약 (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조약, 중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

##### 1. 8. 비준서 교환 (발효조항에 따라)

##### 1. 9. 국내공포조치(관보게재) ※공포의 개념 및 효과

-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절차에 따라 체결된 조약은 공포를 거쳐서 비로소 국내법으로 수용,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됨.
- 공포란 이미 성립된 조약을 국민에게 단순히 주지시키는 선언적, 절차적 행위인 “공표(publication)”와 구별되며, 공포되지 아니한 조약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을 뿐 아니라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지 못함.

#### <표 4> 국제조약체결을 위한 국내절차

## 제4절 분석의 틀

### 1. 제주도내 외국인투자기업 사례분석의 틀

제주도내 외국인투자기업 사례분석을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기준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투자동기 및 과정이다. 투자시점에서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의견수렴의 정도를 분석하게 된다. 둘째, 추진과정에서의 장애와 문제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추진과정에서 생기는 장애와 문제들은 주로 지역주민의 의견, 이에 따른 정책의 변경과 변화 등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바, 이 부분에서는 지역사회의 의견변화와 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된다. 셋째, 문제해결과정에서의 정부의 대응과 태도이다. 이 때 정부라 함은 지방정부와 해당하는 사례에서는 중앙정부가 포함된다.

외국인투자기업사례	분석의 요소	분석의 내용
1) 버자야 그룹의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동기 및 과정</li> <li>○ 추진과정에서의 장애와 문제</li> <li>○ 문제해결과정에서의 정부의 대응과 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시점에서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의견수렴의 정도</li> <li>○ 지역사회의 의견변화와 정책의 변화에 따른 갈등과 문제</li> <li>○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대응과 태도</li> </ul>
2) 녹지그룹 헬스케어타운 및 녹지병원		
3) 제주중국성개발의 무수천 유원지 투자		

<그림 1> 사례분석을 위한 분석의 요소와 틀

## 2. 문제점도출을 위한 인터뷰 분석의 틀

외국인투자기업들의 투자진행과정에서 경험하게 된 문제점, 제도개선안, 정부의 대응태도에 대한 의견 등을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분석의 요소로는 첫째, 투자과정에서의 야기된 문제점과 그 원인에 관한 인터뷰이다. 둘째, 제도개선과 정책개선 방안들에 대한 인터뷰이다. 셋째,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긍정적 인식확대를 위한 노력의 경험과 대안에 대한 인터뷰이다. 넷째, 안정적 투자를 위한 지방정부 대응태도에 대한 인터뷰

외국인투자기업사례	인터뷰 분석의 요소	분석의 내용
1) 버자야 그룹의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점과 그 원인에 관한 인터뷰</li> <li>○ 제도개선과 정책개선 방안들에 대한 인터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부대응의 태도를 유형화하고 유형별 분석</li> </ul>
2) 녹지그룹 헬스케어타운 및 녹지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긍정적 인식확대를 위한 노력의 경험과 대안에 대한 인터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확대를 위한 방안도출</li> </ul>
3) 제주중국성개발의 무수천 유원지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정적 투자를 위한 지방정부 대응태도에 대한 인터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안 도출</li> </ul>

<그림 2> 인터뷰 분석을 위한 분석의 요소와 틀

### 제3장 사례분석 및 인터뷰 분석

#### 제1절 제주도내 외국인투자기업의 현황

제주도에 투자된 외국인 투자기업은 총23개 사업으로, 공사 중단 3개소, 절차이행 7개소, 일부운영 13개소가 있으며, 공사 중단 3개소 중 2개소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17년 4분기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외국인 투자사업 현황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과 (2017. 12. 31. 기준)

투자 사업명		기업명	위치 (면적㎡)	추진상황	총사업규모 (억원)	
23개 사업			12,213,556		156,447	
싱가폴('06)	폴로승마장	㈜한국폴로컨트리클럽	행원 (204,564)	'10.6 폴로 경기장 개장	535	
말련('08)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버자야제주리조트㈜	상례 (747,192)	15. 7. 공사중단	25,144	
일본 (2개소)	2개 사업	소 계	197,134		2,150	
	'12	제주그랜드리조트	청봉인베스트먼트㈜	상가	2,000	
	'15	그랜드메트로관광호텔	리켄코리아㈜	하에 (8,212)	'16. 준 공	150
중국 (16개소)	16개 사업	소 계	7,585,908		101,388	
	'10	제주분마이호텔	제주분마이호텔(주)	이호 (231,486)	절차 이행중	10,641
	'11	제주백동신원리조트	백동신원(주)	위미 (553,229)	'13. 착 공	2,432
	"	차이나비문드힐 관광단지	(유)용유개발	봉경 (880,226)	절차 이행중	7,269
	'12	무수천유원지	㈜제주중국생개발	해안 (451,146)	'17. 일부운영	2,363
	"	오션스타	오삼코리아(주)	고경 (37,829)	'14. 준 공	1,100
	"	헬스케어타운	특지역주헬스케어타운(유) 외 2	동풍 (387,684)	'12. 착 공	13,494
	"	토평농어촌관광단지	㈜빅보르투자개발	트평 (2,869)	'12. 일부운영	377
	'13	덕림제주상그릴라호텔	㈜덕림제주상그릴라호텔	해안 (9,998)	'14. 운 영 중	149
	"	열해당리조트	㈜열해당리조트	유수암 (222,487)	'16. 착 공	1,280
	"	상모유원지	신해원(유)	상모 (360,749)	절차 이행중	4,327
	"	라헨느리조트	제주용생개발(주)	봉개 (116,328)	절차 이행중	1,000
	'14	테디펠리스	차이나테디(주)	상장 (98,792)	'15 준 공	1,200
	"	제주그린벨리관광타운	사합(주)	노형 (129,356)	'12. 착 공 '14. 외투변경	600
	'15	후아다관광호텔	㈜제주후아다제이케이	척달 (4,622)	'16. 공사중단	240
	"	오라관광단지	제이씨씨(주)	오라 (3,575,753)	절차 이행중	52,180
'16	특인제주 체류형 관광단지	자유안(주)	가시 (523,354)	'15. 착 공 '16. 외투변경	2,736	
홍콩 (3개소)	3개 사업	소 계	3,478,758		27,230	
	'06	보타메디	㈜보타메디	제주	운영중(식품)	60
	'13	신화역사공원	탐정제주개발(주) 외 2	서광 (2,519,628)	'15. 착 공	19,931
'15	신화련금수산장 관광단지	신화련금수산장개발(주)	금약 (959,130)	절차 이행중	7,239	

※ 투자규모 50억 이상인 그린벨드형 사업(부차매입 사업계획 수립)에 한해 작성

<그림 3> 제주도 외국인 투자사업 현황

## 제2절 안정적 투자를 위한 지방정부 대응태도에 대한 인터뷰

### 1. 안정된 조세정책과 법률불소급의 원칙 강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결정한 행정행위의 효력은 일관성을 가지고 지켜져야 한다는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다. 제주중국성개발의 P임직원은 이와 관련 사례를 다음과 같이 인터뷰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2012년 최초 제주도 투자를 결정하여 해안동 ‘무수천유원지개발 사업’에 투자했고, 2013년 5월 제주도로부터 개발사업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당시 토지를 취득할 때 3년 이내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제주도는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내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였고, 당사는 사업진행을 위하여 추징금을 납부하였고, 그 후 법률적인 제한이라는 정당한 사유를 근거로 과세전적부심사, 지방세이의신청을 제주도에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최종 적으로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통해 법률에 의한 제한과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아 추징된 세금을 환급받은 경험이 있다.”(제주중국성개발, P임직원, 2019.4 인터뷰)

### 2. 행정행위의 일관성 강조

중앙정부가 승인한 사업을 지방정부가 취소한 사례다. 행정행위의 효력은 일관성을 가지고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녹지국제병원의 사례를 다음과 같이 인터뷰하고 있다.

녹지국제병원 G임원은 “회사는 의료사업 추진 당시 온전한 개설허가를 전제로 제반 계획을 수립했지만 2018년 12월 5일 제주도청은 결국 외국인전용이라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다”며 “회사는 그런 조건으로는 도저히 병원개설을 행할 수 없으며, 지난 2월 14일 조건부개설허가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G임원은 “행정소송과 별도로 제주도에 고용유지를 위해 완전한 개설허가를 해

주던지, 완전한 개설허가가 어렵다면 제주도에 인수하거나 다른 방안을 찾아 근로자들의 고용불안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했지만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하고, 병원개설허가도 취소되는 형국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4년 동안 병원설립 및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이제는 병원 사업을 부득이하게 접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영리병원사업을 접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G임원은 “객관적인 여건상 병원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들과 마냥 같이 할 수 없기에 이 결정을 공지하게 됨에 대단히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며 근로자대표를 선임해 주면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토록 하겠다”고 해고 절차를 밝겠다는 뜻도 밝혔다.(녹지국제병원, G임직원, 2019.4 인터뷰)

### 제3절 투자기업별 투자내용과 문제점 분석

#### 1. 버자야 그룹의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투자

##### 가. 투자동기 및 과정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말레이시아 국적인 버자야 그룹이 2005년 10월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아 진행한 개발사업으로 당시 제주국제자유도시라는 제주의 미래를 꿈꾸게 했고,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7대 선도프로젝트 중 모든 제주도민의 박수를 받으며 외국인투자기업 1호로 추진된 사업이다. 예래단지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라 한다)가 맨 처음으로 외국자본의 투자를 받은 사업이며 JDC는 2005년 10월 제주도로부터 예래단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및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실시계획을 인가받았다.

그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JDC는 외국인 투자 1호로 유치한 버자야 그룹과

2008년 8월 지분율이 각각 19%, 81%인 합작법인 버자야제주리조트를 설립했다. 이에 따라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사업자가 돼 2009년 10월 JDC로부터 전체 개발 사업 용지를 사들였다.



<그림 4> 예래휴양명주거단지 조감도

버자야제주리조트는 1조8천억원을 투자해 레지던스호텔(50층·높이 240m), 리조트호텔(38층·높이 170m), 카지노호텔(27층·높이 146m) 등 초고층 건축물과 콘도미니엄, 메디컬센터, 쇼핑시설 등을 갖추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예래단지는 2009년 11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고시됐고, 2010년 11월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으로 승인됐다. 2011년 12월에는 기반시설 조성 공사가 완공됐다.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이후 사업계획을 두 차례 더 변경해 예래단지를 '제주에어 레스트시티'로 조성한다며 2013년 3월 첫 삽을 떴다. 총 10단계 공사 중 1단계 사업으로 콘도 147채, 상가 96동을 지어 분양하는 곳자왈빌리지 공사를 진행했다.

2012년 일부 토지주들은 제한적토지수용은 위법하다며 제기한 토지수용등 무

효소송이 2015년 3월 대법원에서 사업 무효 판결이 났으며 같은 해 8월 공사가 중단됐다. 2018년 1월 대법원은 행정기관이 내준 예래단지의 15개 인허가도 모두 무효로 판결했다. 14년이 흐른 현재 예래단지 사업은 좌초돼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고, 짓다 만 시설물은 마을의 흉물로 전락했다. 수많은 법정공방이 오갔고 앞으로 외국 투자자의 수조원대 손해배상 소송도 우려되고 있다.

#### 나. 추진과정에서의 장애와 문제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장애요소들은 크게 네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일부토지주의 소송 및 판결에 의한 사업의 중단이다. 대법원 1부는 2015년 3월 20일 예래단지 용지로 자신의 땅을 수용당한 강모씨 등 4명이 JDC와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 수용 재결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 JDC와 도 지방토지수용위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년 첫 삽을 뜬 예래단지는 2015년 3월 대법원의 사업 무효 판결로 사업 추진이 중단됐고 그 이후 5개월 뒤인 같은 해 2015년 8월 공사가 중지됐다. 당시까지 콘도 등 147실과 판매시설 일부에 대해 공사가 진행됐다. 공정률은 전체 1단 계획의 65%다.

둘째, 토지주와의 갈등과 소통의 부재에 따른 사업의 중단이다.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이 진행되면서 토지주와 JDC, 도와의 갈등의 골도 커졌다. 2010년 광주고법은 당시 토지수용 재결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낸 원고인 옛 토지주들과 피고인 JDC에 화해를 권고했다. 그러나 JDC는 법원의 화해 권고에 응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결국 2015년 3월 대법원 판결에 의해 전체 사업이 중단됐다.

셋째, 사업파트너와의 갈등과 소송에 따른 어려움이다.

JDC는 외국인 투자 1호로 유치한 버자야 그룹과 협력하여 2008년 8월 지분율이 각각 19%, 81%인 합작법인 버자야제주리조트를 설립했다. JDC의 권유로 예

래단지 사업에 뛰어든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도 사업 좌초에 따른 손해를 배상 하라며 JDC를 상대로 2015년 11월 3천50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버자야 그룹은 소송이유서에서 앞으로 예래단지 사업을 모두 완료했을 때의 잔존 가치 등을 고려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버자야 그룹은 총사업비 2조5천억원을 모두 투자하고 운영했을 때 수익 등 잠재적인 사업가치까지 모두 포함해 총 5조1천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넷째, 흉물로 방치된 사업현장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이다.

제주올레 8코스(월평~대평) 인근 서귀포시 예래동 해안 길은 아름다운 해안 절경을 간직한 최고의 올레 코스로 약 140동이 밀집돼 있다 말고 방치된 모습과 해안 절경 사이에 폐허가 된 채 방치된 예래단지 시설물들이다. 예래단지 부지 내부에는 전기시설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쓰레기들도 곳곳에 잔뜩 쌓여 있다.

예래동에 사는 K씨는 "사업 부지가 공사 중단 이후 오랜 기간 방치돼 우범지대가 됐다"면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예래단지로 인해 생태마을로 알려진 마을의 풍광이 훼손돼 지역 주민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한다.



<그림 5> 대법원 판결 후 방치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2015.03)

다. 문제해결과정에서의 정부의 대응과 태도

소송이 진행 중인 2010년 광주고법은 당시 토지수용 재결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낸 원고인 옛 토지주들과 피고인 JDC에 화해를 권고했다. 그러나 JDC는 법원의 화해 권고에 응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결국 2015년 3월 대법원 판결에 의해 전체 사업이 중단됐다.

JDC는 화해를 통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토지 수용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고, 사업이 불법임을 알리기 위해 소송을 냈다는 토지주와 서로 날카롭게 대립했다. 처음 대법원판결이 난 2015년 3월 말 이후에도 JDC는 토지주들과 대화에 나서지 않았다. 대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예래단지 공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다.

예래단지 공사는 같은 해인 2015년 8월 토지주들이 낸 공사중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중지됐다. 토지 수용 재결 취소 소송을 내 승소한 J씨(예래동)는 "2015년 토지주 등 주민들은 예래단지 문제로 도 및 JDC와 끊임없이 대화를 요청했으나 묵살 당했다"면서 "대법원의 사업 무효판결 이후에도 도와 JDC는 사과는 커녕 제주도특별법을 개정해 끝까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제주도와 JDC는 대법원 특별1부의 판결이 나와 사업이 완전히 좌초된 이후인 2019년 3월에 들어서야 대화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요컨대 위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도와 JDC 그리고 사업주인 버자야 그룹은 적어도 사건의 직접 당사자와 보조참가자의 지위에 있는 사실상 피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피고들은 1심판결과 2심판결 후 소통의 기회가 충분히 있었고, 더욱이 2심 소송이 진행 중인 2010년 광주고법은 소송을 낸 원고인 옛 토지주들과 피고인 JDC에 화해를 권고했으나 JDC는 법원의 화해 권고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2015년 3월 대법원 판결에 의해 전체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제주도에 대형사업 치고 제대로 환영받고 순탄하게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며 "헬스케어타운도 그렇고 예래단지도 그렇고 JDC가 하는 사업이 몇

개 빼고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업이 많다”고 JDC를 비판하고 있다.

사업을 총괄 기획한 JDC, 그 사업의 인허가를 승인한 제주도, 승인된 사업을 추진한 버자야 그룹은 희망과 영광으로 시작된 예래단지 사업을 통해 당사자 간 법률적인 다툼은 물론 지역주민과 지역사회 전체에 엄청난 불안을 동반한 상처를 주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한 대응과 태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할 것이다.

## 2. 녹지그룹 헬스케어타운 및 녹지병원의 투자

### 가. 투자동기 및 과정

녹지그룹이 진행한 녹지병원은 제주도가 추진하고 기획한 7대선도 프로젝트의 하나로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에 조성되었으며, 국내 1호 외국인영리병원으로 추진됐으나 준공 후 개설허가가 취소된 상태다.



<그림 6> 녹지국제병원 조감도

녹지그룹은 제주도 내 헬스케어타운 사업을 하기 위해 2014년 11월14일 법인설립신고를 했고, 제주도청의 요청 하에 의료사업을 추가해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의 사전승인을 받아 2017년 7월 녹지국제병원 건물을 준공했다. 준공 후 2017년 8월 병원에 근로할 직원을 채용하고 운영을 위한 직원교육을 완료하였다.

2018년 12월 5일 제주도는 외국인전용이라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승인했고, 녹지그룹은 그런 조건으로는 도저히 병원개설을 이행할 수 없다며, 2019년 2월 14일 조건부개설허가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018년 4월 17일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 처분을 취소했다. 취소 사유는 2018년 12월 5일 외국인에 한정해 진료한다는 조건으로 녹지병원 개설을 허가했는데 3개월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하지 않았으며 이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 나. 추진과정에서의 장애와 문제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장애요소들은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중앙정부(보건복지부)가 승인한 사업을 지방정부(제주특별자치도)가 취소한 사례다.

녹지그룹은 2015년 12월 대한민국 정부인 보건복지부로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 를 위한 영리병원(투자개방형병원) 사업을 승인 받았다.

녹지그룹은 공사비 등 총778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안에 2018년 7월 병원을 준공했지만, 최종 허가권자인 제주도는 2018년 12월 5일 제주도는 외국인전용이라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승인했고, 녹지그룹은 그런 조건으로 는 도저히 병원개설을 이행할 수 없다며, 2019년 2월 14일 조건부개설허가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4월 17일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 처분을 최종 취소했다.

둘째 보건의료 및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 따른 사업의 어려움이다.

녹지그룹은 2015년 6월에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 허가를 신청했고, 같은 해 12월에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았다. 이제 제주도의 개설 허가 절차만 남은 상태인데, 보건의료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설 허가를 결정하도록 요구했다. 제주도는 이 요구를 받아들여 공론화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고, 2차례 도민 토론회를 먼저 연 뒤 3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시행했으며, 이후 2백 명 규모의 도민참여단을 통해 논의를 진행했다.



<그림 7> 녹지국제병원 준공 후 허가 취소된 현장(2018.04)

그 결과는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로, 2018년 10월 4일 권고안의 형태로 제주도지사에게 제출되었다. 공론화조사위는 최종 조사결과에서 개설을 허가하면 안 된다고 선택한 비율이 58.9%로, 개설을 허가해야 한다고 선택한 38.9%보다 20%포인트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지사는 이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5일 제주도는 외국인전용이라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승인했고, 녹지그룹은 그런 조건으로는 도저히 병원개설을 이행할 수 없다며, 2019년 2월 14일 조건부개설허가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2018년 4월 17일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 처분을 최종 취소했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통과 일관성 없는 정책에 의한 손실이다.

제주 녹지병원의 사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불일치가 사업자, 근로자, 지역사회와 더불어 행정당국까지 얼마나 많은 손실과 갈등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좋은 예이다. 녹지병원 승인과 취소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자

「제주도는 국내 영리병원 1호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줬으나, 녹지국제병원이 시한 내에 개원하지 못하면서 결국 허가를 취소했다.

정부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대상의 제한적 영리병원 설립 허용이후,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찬성 의견과 국내 공공의료체계를 허물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충돌하며 그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17년간 이어졌다. 우리나라에서 영리병원 도입이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은 김대중 정부 당시인 2002년 12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 제정되면서부터다.

당시 이 법은 외국인이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인 전용 영리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외국인의 투자와 입주가 예상을 밑돌았고 내국인을 진료하지 않으면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정작 병원을 세우겠다는 외국인 투자자가 나오지 않았다.

외국인 투자유치가 급선무인 재정경제부는 외국인 전용병원에서 내국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런 내용으로 2004년 말 법이 개정됐다. 꺼져가던 불씨는 2005년 제주에서 재점화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1년 앞두고 제주도는 의료관광이라는 명목으로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었다.

2006년 2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은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인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인의 종류와 요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에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다. 제도적으로 영리병원 설립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어지자 같은 해 12월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이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신규핵심프로젝트로 확정돼 추진됐다.

2008년 들어서 김태환 제주지사가 영리병원 추진의사를 공론화하며 강하게 밀어붙였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여론조사에서 반대 39.9%, 찬성 38.2%로 무산됐다. 이후에도 영리병원 문제는 매번 뜨거운 논란을 불러왔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2월 영리병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발표하며 영리병원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해진 지 10년이 넘었지만, 투자자가 없어 아직 한 곳도 설립되지 않자 정부가 다시 팔을 걷어붙인 것이었다.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는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사인 녹지그룹이 제출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건립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2017년 8월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총 778억을 투자해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면적 1만7천679㎡ 규모의 녹지국제병원을 짓고 도에 개원 허가 신청서를 냈다.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를 놓고 논란이 거세지자 제주도는 이듬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결정하기에 이른다.

2018년 10월 4일 6개월간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설을 허가하면 안 된다'고 대답한 비율이 58.9%로, 허가 의견보다 20% 포인트 높게 나타나 결국 개설 불허 방향으로 도의 방침이 정해졌다. 그러나 그해 12월 5일 제주도는 불허할 경우 제주에 미칠 대내외적인 파장을 우려해 외국인 전용 진료조건부로 국내 첫 영리병원을 승인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도청에서 국내 최초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던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취소와 관련된 발표를 하고 있다.

<그림 8>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발표

후폭풍은 거셌다. 시민사회단체와 사업자 측 양쪽의 반발을 동시에 불렀다. 시민사회단체 등은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개설 불허권고를 무시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사업자들은 외국인 전용 조건부 허가가 위법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녹지국제병원은 90일간의 개원 시한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제주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시한인 지난달 4일까지 문을 열지 못하면서 제주도는 행정적인 취소 절차를 거쳐 17일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결국 17년간 이어진 국내 영리병원 개설을 둘러싼 공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인용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다. 문제해결과정에서의 정부의 대응과 태도

제주도는 2019. 4. 17. 기자회견을 열어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주목받은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영리병원 허용을 둘러싼 논란은 법정으로 공을 넘겼다. 정부역시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결정과 관련해 정부(이기일 보건 의료정책관)는 "현 정부에서 영리병원 확대를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 정책관은 "허가권을 가진 제주도지사가 개설허가를 취소한 상황으로, 정부가 이야기할 것이 없다"면서 "후속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제2 녹지국제병원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에 국한된 특수한 상황이었다"고 전제한 이 정책관은 "현 정부에서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의료 공공성 강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주도가 공론조사를 뒤집고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내린 직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같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국제녹지병원 사례는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라 병원개설 허가권을 보건복지부가 아닌 제주도지사가 가진 가운데 벌어진 특수한 상황으로, 현 정부에서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건립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17년 8월 까지 총 778억을 투자해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면적 1만7천679㎡ 규모의 녹지국제병원을 완공한 사업자는 법과 원칙이 완전히 상실된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행정처리라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제주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아울러 이 문제는 녹지병원과 제주도,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정부 간의 단순한 손해배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해외의 모든 투자 현황과 국제관계에 매우 민감하게 적용되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기승인된 사업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에 국한된 특수한 상황 이었다”는 논리로 사업을 취소하고, 이를 공식발표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할 때 충분히 검토된 사항인지 생각해볼 대목이다.

### 3. 제주중국성개발의 무수천 유원지 투자

#### 가. 투자동기 및 과정

제주중국성개발의 단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유치설명회로부터 시작되었다. 2012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일행은 중국 북경시 소재 호텔에서 조선족기업인연합회 회원을 중심으로 제주도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4개월 후인 2012년 6월 조선족기업인연합회 임원 27명을 제주도에 초청하여 추가 사업설명회와 더불어 사업부지 소개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인센티브를 약속하였다. 이에 북경, 상해, 심천을 중심으로 조선족기업인연합회 31명이 출자하였다. 그해 7월 해안동 ‘무수천유원지개발사업’에 투자하게 되었다.



<그림 9> 무수천 유원지 조감도

당시, 조선족기업인연합회는 중국에 200만 조선족 동포를 대표하는 단체였다. 고국 땅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 제주도에 조선족 동포의 위상을 알리고, 설움의 세월을 보낸 조선족 동포와 그 자손들이 당당하게 고국을 방문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의미가 있었다. 투자자 31명뿐만 아니라 200만 조선족 동포의 숙원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무수천유원지 사업은 전체 3단계 사업 중 1단계 사업인 휴양콘도미니엄 139개 실은 준공하여 현재 운영 중이고, 3단계 사업은 일부 토지주의 반대와 소송으로 이어져 최종적으로 사업 부지에서 제척되었으며, 나머지 2단계는 유보지로 사실상 사업이 멈춰진 상태다.

#### 나. 추진과정에서의 장애와 문제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장애요소들은 크게 네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시민단체와 지역여론의 반대에 의한 사업의 중단이다.

제주중국성개발은 2013년 5월 개발사업승인을 완료하고, 사업에 착수하였으나 사업시작 직후인 2013년 8월 시민단체와 일부 마을사람의 반대로 공사 중단 사태에 이르렀다. 이어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소되었다. 그 후 약 9개월간 사업이 중단되었고,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사업이 제게 되었다.

둘째, 법률에 의한 제한에 따른 어려움이다.

제주중국성개발은 2012년 최초 제주도 투자를 결정하여 해안동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에 투자했고, 당시 토지를 취득할 때 3년 이내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제주도는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내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였다. 제주중국성개발은 사업진행을 위하여 추징금을 납부하였고, 그 후 법률적인 제한이라는 정당한 사유를 근거로 과세전적부심사, 지방세이의신청을 제주도에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최종적으로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통해 법률에 의한 제한과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아 추징된 세금을 환급받은 경

힘이 있다.

정당한 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2012년 최초 투자 당시에는 휴양콘도미니엄(숙박시설)은 투자진흥지구지정대상 사업에 포함되어 있었고, 2014년 6월 제주중국성개발은 투자진흥지구지정의 요건을 완료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14년 8월 제정된 제주도조례에 의거 착공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 받고, 2015년 7월 착공 후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 4월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숙박시설과 미술관, 박물관은 투자진흥지구지정 항목에서 제외됐으므로 본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조세심판원은 위 사항이 법률에 의한 제한이 명백하므로 위법하다 판단한 것이다.

셋째,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사업제한이다.

제주중국성개발은 장애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지속하여왔다. 2015년 3월 제주도의국인투자기업의 1호인 버자야 그룹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사업이 대법원으로부터 무효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1단계 전체공정 약 70%가 진행된 사업이 중단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되었다. 그 여파에 따라, 제주중국성개발 관련 유원지 개발사업의 행정 절차가 약 6개월간 진행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험이었다.

넷째, 조세관련의 일관성에 관한 어려움이다.

제주도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정책에 따라 개발사업승인을 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별장중과세를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중국에서 영주권(F-5)을 목적으로 투자한 투자자는 위 정책을 믿고 제주도에 투자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6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제24조5(투자이민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감면기간을 2018년 12월 31까지만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그 후 2019년 2월 제주도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견과 한·중 관계를 고려하여 부동산투자이민제 시행기간인 2023년 4월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하였으나, 제주도의회는 이를 부결하는 등 조세정책의 일관성에 문제를 보이고 있다.

#### 다. 문제해결과정에서의 지방정부의 대응과 태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업의 근거가 되는 인·허가사항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이를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허가기관이다. 또한 투자를 결정하는 투자자는 행정절차를 근거로 사업계획과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사업기간이라 할 것이다.

대규모 기간산업과 외국인 투자 정책은 지역사회 전체의 이해관계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사안이고, 이에 대한 사업 승인은 그만큼 책임이 동반되는 사안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제주도는 법률에 근거하여 최종적으로 승인된 사업의 진행은 일관되게 추진하여야 하나 일관성과 법절차의 이행합리성에 위배되는 변화된 지역사회의 여론과 도정방침을 우선 적용하는 사례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승인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행정심판청구 건에 대한 집행금지처분 없이 사업진행을 유보시킨 사례라는 점이다.

둘째, 법률에 의해 기 승인된 사업에 대하여 후 제정된 제주도 조례 및 업무지침으로 사업을 제한한 사례이다.

셋째, 예레동 ‘예레휴양형주거단지’사업의 대법원 판결로 개별법에 따라, 크게 관계가 없을 일반 타사업으로써, 승인된 사업에 대하여 중국자본 및 유원지 사업이라는 포괄적 의미를 부여하여 사업을 일시 중단시킨 사례이다.

넷째,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정책에 대한 세제 감면과 외국인 투자정책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 등 투자의 핵심인 일관된 조세정책을 제시하지 못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례는 투자의 핵심 분석 가치인 사업기간에 외생변수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준 정책이며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 제주중국성개발이 투자한 사업을 사례로 정리하면서, 사업의 성공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사업기간이라 전제하고, 현재 제주도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성공사례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가지고 성찰하여보면 적어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주도의 대응과 태도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할 것이다.

#### 4. 시민사회 단체와 행정기관의 입장에 대한 인터뷰

##### 1.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시민사회단체는 시민들의 요구를 대변함으로써 간접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맡고 있다. 특히 산업화 이후 급속하게 분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 수집 능력의 한계가 있고, 따라서 제주 지역 시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외국인투자기업의 현황에 대한 시민단체 O국장의 인터뷰이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에 명시한 바와 같이 외국인의 투자는 반드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부합해야 비로소 그 법이 유효하며, 더불어 보호받을 권리가 생긴다. 또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헌법 제3조제2항은 말하고 있다.

현재 제주에서 진행 중에 문제가 되고 있는 녹지국제병원, 예래동주거휴양단지, 송악산유원지개발사업 등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위에서 언급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부합한다 할 수 없고, 아울러 제주시민사회의 공공복리에도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면 사업 주체가 단순히 외국인 투자기업이라서가 아니라 국내기업이 진행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중지해야한다고 주장한다.

##### 2. 행정당국의 입장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인·허가를 담당하는 행정당국의 입장에서 바라본 현재 제주의 상황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청 관계자의 인터뷰이다.

“제주도청 공무원으로서 처음 하고 싶은 말은 「모든 개발사업의 시작은 행정당국의 승인으로 시작해서 행정당국의 최종 허가로 종결 된다」 는 사업자의 입장에 공감한다.

투자의 개념은 신뢰를 바탕으로 두지 않고는 정립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르지 않으며, 더욱이 외국에 투자를 결정한 경우는 그 신뢰와 더불어

확실한 보호와 보장이 담보 되어야 비로소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제주에서 진행 중에 취소나 정지된 사업은 대부분 ‘법률에 의한 제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사업자와 더불어 행정당국에서도 동일한 무게감으로 부담이 존재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다.

그러나 사업을 주관하는 기업의 CEO와 담당자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개발사업시행승인고시’를 사업의 최종 허가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개발사업승인고시’는 인·허가 의제 및 승인조건을 수반하고 있고, 아울러 승인조건은 해당하는 시설기준, 토지 이용, 상수와 하수, 건축, 환경, 도로 및 교통 등 개별법에 따라 추가 승인을 득한 후, 승인조건 해당하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해야만 비로소 ‘개발사업시행승인고시’가 유효하다 할 것이다.”



# 제 주 시



수신 제주도 연동 300-1 (주)제주중국성개발 대표이사 당빙하오 귀하  
(경유)

제목 무수천유원지 『BLACK PINE RESORT 조성사업』 개발사업 시행 승인사항 알림

1. 항상 제주 관광발전을 위하여 힘써오신 노고에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주도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 관련하여 귀하께서 신청한 무수천유원지 『BLACK PINE RESORT 조성사업』 개발사업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수천 유원지 『BLACK PINE RESORT 조성사업』 개발사업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인·허가의제사항 및 승인조건 이행등 관련규정에 의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고시문 1부
- 2)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인·허가 의제사항 및 승인조건 1부. “끝”



주무관	강동철	관광개발담당	홍종택	관광진흥과장	전결 2013. 5. 7. 강용찬
협조자					
시행	관광진흥과-6559	(2013. 5. 7.)		접수	
우	690-701	제주 제주도	이도2동	제주시청	1176-1(시청로28) / http://www.jeju.go.kr
전화번호	728-2762	팩스번호	728-2759	/ kangdc24@korea.kr	/ 대국민 공개

“쉽고 편리한 우리 집 새주소, 언제 어디서나 도로명주소입니다”

<표 5> 개발사업시행승인고시 공문

## 5. 합의

문헌고찰과 인터뷰를 통한 사례분석에서 얻어진 합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투자기업의 제주도에서의 투자와 사업과정에서 느끼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 1) 일부토지주의 소송 및 판결에 의한 사업의 중단이다.
- 2) 토지주와의 갈등과 소통의 부재에 따른 사업의 중단이다.
- 3) 사업파트너와의 갈등과 소송에 따른 어려움이다.
- 4) 흉물로 방치된 사업현장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이다.
- 5) 중앙정부(보건복지부)가 승인한 사업을 지방정부(제주특별자치도)가 취소한 사례이다.
- 6) 보건의료 및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 따른 사업의 어려움이다.
- 7)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통과 일관성 없는 정책에 의한 손실이다
- 8) 시민단체와 지역여론의 반대에 의한 사업의 중단이다.
- 9) 법률에 의한 제한에 따른 어려움이다.
- 10)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사업제한이다.
- 11) 조세관련의 일관성에 관한 어려움이다.

둘째, 외국투자기업들이 제주지방정부에 바라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었다.

- 1) 중앙정부가 승인한 사업에 대해서 정부는 신뢰보호의 원칙상, 그 내용을 받아들여서 사업이 지속되기를 보장해주라는 것이었다.
- 2) 이미 사업승인이 된 경우는 다른 요소에 의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다시 인허가를 요구하거나 사업을 중단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주길 바라는 것이었다.
- 3) 최초의 투자 시점에서의 규정과 내용이 적용되어 중간시점에서의 변화로 인한 기업의 피해가 없게 해주길 바라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감면된 취득세에 대해서 사업 중간시점에서 변경요청 추징을 하는 경우에 대한 불평이 있었다. 감면된 세율을 적용하다가 중간시점에서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것이었

다.

4) 타사업의 문제가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예래휴양주거단지의 문제가 그 외 다른 사업의 추진을 중단시키는 사례가 있었던 바, 단지 하나의 사업에 문제가 발생했다 하여 다른 사업들에 대하여 지방정부의 일방적인 중단과 점검 등의 이유로 통제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셋째, 행정당국에서 바라는 것이다. 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개발사업시행승인고시’는 사업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추를 끼운 것이며, 사업의 최종 허가로 인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개발사업승인고시’는 인·허가 의제 및 승인조건을 수반하고 있고, 아울러 승인조건은 해당하는 시설기준, 토지이용, 상수와 하수, 건축, 환경, 도로 및 교통 등 개별법에 따라 추가 승인을 득한 후, 승인조건 해당하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해야만 비로소 ‘개발사업시행승인고시’를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사업자는 승인고시에 수반된 ‘인·허가 의제 및 승인조건’을 반드시 이행해야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 제4장 외국인투자기업관련 방향과 인식전환제안과 정책제언

### 제1절 제도적 측면의 정책제언

#### 1. 초기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제도 개선

투자 안을 구성하고, 기획안을 스크린(screening, 사전검토)하는 과정에서부터 지역주민과의 소통채널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과정을 거친 사업에 대해서는 이후의 인허가 과정에서도 이와 관련 내용, 예를 들어 주민공람, 주민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생략해줌과 동시에 지역주민과의 의견의 통일을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기존 인허가 사항에 변경이 오거나 관련 인허가 사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 2. 제도적 일관성을 위한 정책제언

행정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이 지켜지는 외국인투자기업관련 제도가 되어야 한다. 이는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실체가 바뀌거나 변화하더라도 기존 인허가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신뢰보호의 원칙상 일정기간 그 효력이 유지되도록 제도적으로 구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국내투자에서도 신뢰보호의 원칙은 중요하며, 외국인에게는 더욱 중요한 정책지향이라 할 수 있다. 자국이 아니라 외국에 투자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불비로 인허가 사항이 변경되거나 각종 정책의 변화로 비즈니스나 대행정(對行政)업무가 변한다면 외국인투자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게 된다.

#### 3. 법률적 대응을 위한 정책제언

모든 투자행위의 시작은 계약에서 비롯된다 할 것이다. 또한 사업의 시작과 종결 역시 행정당국의 사전승인과 사후검사에 따른 결정에 의해 진행된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법률적 논쟁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부합 하는가, 둘째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가이다.

법률불소급(法律不遡及)의 원칙이란 법은 시행 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며,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소급효(遡及效)를 인정하여 그 시행 이전의 사항에 대하여서도 신법을 적용한다면 국민의 법적 생활이 불안정하게 되고, 법질서가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다 헌법 제13조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訴追)되지 아니하며…”라고 규정하고, 형법 제1조제1항에서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를 선언한 것이지만,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

‘정당한 사유’는 대한민국이 정한 모든 법률에서 그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세법 등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의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법률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 특혜를 원하지 않으며, 또한 부당한 제한을 받는 것 역시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투자를 유치하는 행정당국은 해당사업과 관련된 국내법, 국제법과 더불어 해당 국가와 체결된 국제협약(조약)까지 충분히 검토하여 기 투자된 기업과 법률적 논쟁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이미 투자한 기업의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보다 더 좋은 투자유치 정책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 제2절 정부차원 의사결정과 인허가 결정관련 정책제언

###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의사결정 창구의 일원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사결정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한다. 제주도는 이미 특별자치도로서의 제도와 역할을 하고 있으나 외국인투자기업관련해서는 국가의 의견에 따라 좌지우지, 우왕좌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예를들어 사법부의 의사결정에 따라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미 행정행위로써 결정난 사항이 반대의견제시, 사법부의 결정, 기존사업의 중단, 책임전가 등의 이유로 인해 외국인투자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방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지방정부의 결정이 중앙중부에 의해서 번복되거나, 중앙정부의 결정이 지방정부로 이전되어 왔음에도 또 다른 정부부처에 의해서 번복되거나 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 제주지역의 개발과 관련 신뢰성을 잃는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 2. 인허가관련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 확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정부는 국가의 정책지향과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중재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는 바,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역의 일은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제도가 구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계에서 기존 사업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자의 역할론에 있어서 선명하지 못한 것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유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제3절 조세제도와 관련 정책제언

투자시점에서 제공한 조세혜택 등 제안된 인센티브 제공을 유지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 투자시점에서 약속한 조세혜택이 정책변화로 불이익을 주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세감면을 보장받았으나 3년 이내의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했다는 사유로 취소된 사례가 있었다. 제주도는 감면세금을 추징했고, 사업자는 세금을 납부 후 소송을 제기했고, 조세심판을 통해서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아 다시 회수하는 사례가 있었다. 투자진흥지구지정제도가 사업진행 과정에서 조례에 의해 변경된 사항으로, 3년 이내에 투자진흥지구를 받지 못한 사항은 법률에 의한 제한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위배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는 바, 이러한 비합리적 법적용은 없어야 한다. 이렇게 행정행위의 일관성을 담보 받지 못할 경우 행정의 신

퇴성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것이며,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외교 관계에서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 제5장 결론

본 연구는 제주도내 외투기업 유치의 동기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외투기업 유치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여,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고, 긍정적인 점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에 있었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주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미래의 제주발전에 동지적 입장에서 참여하려는 의지였으나 여러 가지 장애요소에 의해 제도의 변화, 한 제도에 있어서도 다양한 해석, 상급관청의 다른 해석 등으로 사업의 지연은 물론 경제적 피해와 제주도과 대한민국의 이미지 훼손에 대한 개선을 찾아보고자 하는 데에 있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부동산을 매개로하는 개발이면서 투자이민제도와 연결되는 사업의 사례들을 가지고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투자 통합공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과 조례의 규정 등의 규정을 검토하여 외국인투자의 개념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보호관련 규정들을 살펴보았다.

국제적인 협약으로는 대한민국과 중국과의 협약, 대한민국과 중국과 일본과의 협약을 살펴보았다.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내국법규정으로 규제하는 것에 한계점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사례로는 1) 버자야 그룹의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투자, 2) 녹지그룹 헬스케어타운 및 녹지병원, 3) 제주중국성개발의 무수천 유원지 투자 등이다.

관련 그룹의 임직원의 인터뷰를 통해서 투자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점, 제도개선을 위해 바라는 사항들, 지역사회에서 긍정적 인식확보를 위한 노력, 제주도가 지원해주었으면 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 조사하고 기술하였다.

정책제언으로는 1) 초기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제도 개선, 2) 제도적 일관성을

위한 정책제언,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의사결정 창구의 일원화, 4) 인허가관련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 확보, 5) 조세제도와 관련해서는 투자시점에서 제공한 조세혜택 등 제안된 인센티브제공을 유지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하였다.

아울러 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개발사업시행승인고시’는 사업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추를 끼운 것이며, 시설기준, 토지이용, 상수와 하수, 건축, 환경, 도로 및 교통 등 개별법에 따라 추가 승인을 득한 후, 승인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해야만 비로소 ‘개발사업시행승인고시’가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사업자는 승인고시에 수반된 ‘인·허가 의제 및 승인조건’을 반드시 이행해야한다는 행정당국의 의견을 기술하였다.

## □ 참고문헌

- 김상명(2013),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투자이민제도 개선방안,”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 제17호.
- 오준병(2011), “외국인직접투자와 제조업 생산성에 관한 실증분석 ; 기업 간 이질성을 중심으로,” 한국산업조직학회, 「산업조직연구」 제19권 2호
- 이성봉(2017),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한독경상학회, 「경상논총」 제35권 4호.
- 주규희(2012), “증액투자 유치활성화 방안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기업경제연구」 제41권 제1호.
- 김필현 외(2015), “외국인투자 유치 관련 지방세 지원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 한종범(2018), “예대휴양형주거단지 갈등양상분석과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 현대경제연구원(2014), “중국의 외투기업 유치정책 7대 변화와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 제577권.
- KOTRA, 「외국인투자 가이드」, <http://www.investkorea.org/kr/policy/overview.do>
- 이승철(2010). “해외부동산 집합투자기구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례연구”,한성대학교 석사논문
- 송영관(2015), “경제특구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의 성과분석”,경희대학교, 한국개발연구원 제37권
- 연태훈(2003), “외국인직접투자의 산업 간 생산성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한경수(2017), “국내진출 외국인투자기업의 성과 결정요인”,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 한국개발연구원(2015), “경제특구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의 성과분석”, 한국개발연구 2015년 특별호
- 곽병덕(2013),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정책 요인에 대한 중요도 : 성과 만족도 분석”, 영남대학교, 한국관세학회지 14권, 4호
-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7 외국투자기업 경영환경 애로조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Invest Korea 투자정보팀

<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for  
foreign investment-related companies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Jong-Myoung Park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yung-Su Hwang)

This is the time to study the motivations for attracting foreign-invested companies in Jeju Island, identify the following current status and problems, improve them if there are problems, expand the positive points, furthermore study about policy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Currently, there are 23 foreign investment companies invested in Jeju Island, 3 of which are suspended, 7 are in process, 13 are in operation, and 2 of 3 are suspended.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defined in this study refers to the acquisition of stocks or stakes in a domestic company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 continuous economic relationship with a domestic company, such as participation in management and technical cooperation, investment in investment products recognized by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such as capital goods, industrial property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omestic real estate, and stocks of foreign listed companies in addition to cash through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The study consists of the following contents. First, analyzation of the system to attract foreign-invested companies and related laws. This is to understand the activities and their causes and legal institutional grounds also positive and negative problems of various foreign-invested enterprises in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econd, it is an analysis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related to foreign-funded enterprises. It analyzes the content of international treaties equivalent to those applied in domestic law and grasps the grounds for interpretation of domestic policies and systems. Third, analyze the case of Jeju Island. We will identify the current status and the problems, and the needs of foreign companies. Fourth, we will analyze the positions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Jeju Provincial administrative authorities in Jeju region, and identify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community needs. Fifth, implication through case analysis of Jeju Island is derived. This is to interpret the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omestic law and international conventions. Finally, suggest solutions of the differences between the results of institutional and case analysis.

This study aims to expand the positive role of foreign-invested enterprises in Jeju and we expect they analyze the requirements of the local community and the requirements of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in order to find win-win ways with the local community. In addition, I would like to make a contribution to the improvement of policy and system for the activation of attracting foreign-invested enterprises and for the stable business progress of already invested companies.

**Key words:** Foreign-funded enterprises. Real estate investment immigration. Development business. International Convention. Tax judgment.

## [부록 1]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협약

###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2007년 9월 8일 시드니에서 서명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이하 “채약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 경제 및 통상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자를 보다 증진하기를 희망하고, 투자 및 투자와 관련된 사업 활동에 대하여 호의적인 대우와 보호를 부여하여 다른 쪽 채약당사자 영역 안에서 어느 한쪽 채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하는 투자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를 의도하며, 투자 증진과 상호 보호가 양국 간의 경제·통상·기술 영역 내의 교류를 촉진시킨다는 것을 인식하고, 한·중간 포괄적이고 협력적인 파트너십 증진을 약속한 2003년 7월 8일 한·중간의 공동 성명서 정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 1 조 정 의

이 협정의 목적상,

1. “투자”라 함은 어느 한쪽 채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투자 시점에 적용가능한 다른 쪽 채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다른 쪽 채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투자하는 데 사용한 모든 종류의 자산을 말하며 특히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가. 동산·부동산 및 저당권·유치권·질권·용익권 등 물질적 재산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
- 나. 지분·주식·채권·회사채 또는 그 밖의 형태의 회사·기업·합작 사업에의 참여
- 다. 금전청구권이나 투자와 관련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행청구권
- 라. 저작권·상표권·특허권·의장·기술공정·노하우·영업비밀·상호권을 포함하는 지적재산권과 영업신용
- 마. 천연자원의 탐사·추출·개간 또는 개발을 위한 권리를 포함하여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모든 권리 및 법률에 따른 면허와 허가 투자된 자산 형태의 어떠한 변경도 그 자산의 투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투자자”라 함은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영역 안에 투자하는 어느 한 쪽 계약당사자의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자연인”이라 함은 각 계약당사자의 법에 의하여 그 계약당사자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을 말한다.

나. “법인”이라 함은 회사·공공기관·재단·조합·상사·단체·기업 및 협회 등 각 계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설립 또는 조직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

3. “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발생한 금액을 말하며, 특히 이윤·이자·자본이득·배당금·사용료 및 모든 종류의 수수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재투자의 경우 그러한 재투자로 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투자로서 동등한 보호를 향유한다.

4. “국제연합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이라 함은 1976년 4월 28일 국제연합국제무역법위원회에 의하여 채택된 국제연합국제무역법위원회의 중재규칙을 말한다.

5. “ICSID 협약”이라 함은 1965년 3월 18일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 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워싱턴 협약을 말한다.

6. “본부”라 함은 ICSID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를 말한다.

## 제 2 조 투자의 증진 및 보호

1. 각 계약당사자는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 영역 안에서 투자하는 것을 장려하며 그러한 투자를 자국의 법령에 따라 허용한다.

2. 각 계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항상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완전하고 지속적인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

3. 어떠한 계약당사자도 다른 쪽 계약당사자 투자자가 투자를 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하는 것에 대해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또한 어느 한쪽 계약당사자는 국내산 사용·기술 이전 또는 수출 이행 의무에 관하여 다른 쪽 계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4. 투자 및 투자와 관련된 사업 활동을 목적으로 다른 쪽 계약당사자에 입국하고 체류하기를 희망하는 어느 한쪽 계약당사자의 국민들은 사업 활동을 위한 면허와 허가 신청 및 다른 쪽 계약당사자 안에서의 입국·체류·거주 신청에 대하여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호의적인 고려를 받는다.

### 제 3 조 투자의 대우

1. 어느 한쪽 계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 안에서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에 대하여 투자의 확장·운영·관리·유지·사용·향유·판매 또는 그 밖의 처분(이하 “투자 및 영업 활동”이라 한다)에 관하여 유사한 상황에서 자국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이하 “내국민 대우”라 한다)를 부여한다.

2. 제2조 제3항 및 제3조 제1항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안에서 유지되는 현행의 비합치조치 또는 개정되기 이전의 비합치조치의 비합치 효과를 증가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향후 모든 개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일단 허가된 투자에 부여된 대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원래의 투자가 행해진 시점에 부여된 대우보다 제한적이지 않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모든 비합치조치를 점진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각 계약당사자는 자국 영역 내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 및 투자 관련 활동에 대하여 유사한 상황에서 제3국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 및 투자 관련 활동에 대하여 투자의 허용을 포함한 투자 및 기업 활동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이하 “최혜국 대우”라 한다)를 부여한다.

4. 이 조 제3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계약당사자가 다음 각목의 사항에 의하여 부여한 어떠한 대우·특혜 또는 특권의 혜택을 다른 한쪽 계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가. 관세동맹·자유무역지대·경제 동맹 및 그러한 동맹이나 유사한 기관으로 귀결되는 국제 협정
- 나. 전적으로 또는 주요하게 조세와 관련된 국제 협정 및 약정
- 다. 국경지역에서 소규모 국경무역을 촉진하는 약정

5. 그들의 권리를 추구하고 변호하기 위해 법원, 행정재판소 및 행정기관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한쪽 계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어느 한쪽 계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자국의 투자자나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가 부여된다.

### 제 4 조 수 용

1. 어떠한 계약당사자도 다른 한쪽 계약당사자 투자자의 자국 영역 안에서의 투자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용·국유화하거나 수용·국유화에 상당하는 조치(이하 “수용”이라 한다)를 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 가. 공공이익을 위하여
- 나. 국내법 및 국제 표준에 따른 적법절차에 의하여
- 다. 비차별적으로
- 라. 제2항에 따라 보상하는 경우

2. 보상은 수용되기 직전의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치에 상응하여야 한다. 공정한 시장가치는 수용이 공공연히 미리 알려짐에 따라 발생하는 가치의 변화를 반영하지 아니한다. 보상은 지체 없이 지급되고, 수용일부터 보상 지불일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는 적정한 이자를 포함한다. 보상은 유효하게 현금화되고,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으며, 수용일에 적용되는 시장 환율에 따라 투자자의 국제통화 및 국제통화기금협정의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통화로 자유롭게 대환되어야 한다.

3. 제9조의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수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투자자는 자신의 사안 및 보상 금액에 대하여 이 조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수용을 행한 계약당사자의 법적 절차에 따르는 법원 또는 행정재판소에 의하여 신속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 5 조

### 손해 및 손실에 대한 보상

1. 어느 한쪽 계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어떠한 종류의 무력충돌, 국가비상사태 또는 소요로 인하여 다른 쪽 계약당사자 영역 안에서의 자신의 투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 복구·배상·보상 또는 그 밖의 다른 해결에 관하여 다른 쪽 계약당사자가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어느 한쪽 계약당사자의 투자자는 다른 한쪽 계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제1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나 손실을 입은 경우, 징발 기간 동안 지속된 피해나 손실 또는 재산 파괴의 결과로 생겨난 피해나 손실에 대하여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는다.

- 가.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재산의 징발
- 나. 전투행위 중에 일어난 것이 아니거나 또는 상황의 필요성에 비추어 요구되지 아니하였던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재산의 파괴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보상에 따른 지불은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보상금액 결정일에 적용되는 시장 환율로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

제 6 조  
송 금

1. 각 계약당사자는 다른 쪽 계약당사자 투자자의 자국 영역에서의 투자와 관련된 모든 지불액이 지체 없이 자국 영역의 안팎으로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송금은 특히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가. 투자의 설립·유지 또는 증가를 위해 필요한 자본
- 나. 수익·이자·배당금·자본 이득·사용료 또는 그 밖의 수수료
- 다. 대출 약정에 따른 대여금을 포함한 계약에 의한 지불금
- 라. 투자의 전면적·부분적 매각 또는 청산으로 인한 수익
- 마.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지불금
- 바. 제9조의 분쟁해결에 따른 지불금
- 사. 투자와 관련하여 고용된 다른 쪽 계약당사자 국민의 급여 및 보수

2. 어떠한 계약당사자도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송금 당일의 시장 환율에 따라 지체 없이 자유태환성 통화로 이루어지는 송금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계약당사자는 다음에 관계되는 경우 공정하고 비차별적이며 신의성실에 입각한 법률의 적용을 통하여 송금을 지연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다.

- 가. 파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
- 나. 증권의 발행, 거래 또는 중개
- 다. 범죄 또는 형사 범죄, 또는 사법 절차에서의 명령이나 판결의 이행 확보
- 라. 통화 또는 다른 통화 증서의 송금의 보고

4. 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계약당사자는 다음의 경우에 각국의 법령에 따라 이 조항 상의 자국의 의무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 가. 중대한 국제수지 및 대외 금융상의 어려움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나. 예외적인 상황에서 자본이동이 거시경제의 운영, 특히 통화·환율 정책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제4항에 따른 조치는

- 가. 계약당사자가 유보한 조항 이외의 국제통화기금협정의 규정과 부합되어야 하고
- 나. 제4항에 규정된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다. 일시적이며 상황이 허락하는 한 신속하게 철폐되어야 하고  
라. 다른 쪽 계약당사자에게 즉시 통지되어야 한다.

6. 이 조의 규정에 언급된 송금은 현행 외환관리 법령에 규정된 관련 정규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러한 정규절차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한다.

가. 해외투자

나. 해외직접투자기업의 청산, 소유권 양도 및 등록된 자본의 감자(회수된 투자 포함)

다. 원금과 등록된 대외부채의 이자(해외 투자자의 대출 포함) 반환

라. 국내 보증인들이 제공한 대외 보증

정규 송금절차의 종료를 위해 필요한 기간은 필요한 보증 문서와 함께 서면요구서가 외환 당국에 제출되는 당일로부터 개시된다. 필요한 인 증은 한 달 이내에 부여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두 달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7. 이 조에서 언급된 정규절차는 이 협정에 규정된 계약당사자의 약속과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지 아니한다. 투자 관련 정규 송금절차는 어떠한 경우에도 원래의 투자가 이루어졌을 당시 요구되었던 정식 절차보다 더 제한적이어서는 아니 된다.

## 제 7 조

### 대위변제

1. 어느 한쪽 계약당사자 또는 그 계약당사자의 지정기관이 다른 쪽 계약당사자 영역 내에서 행해진 투자에 대하여 부여한 보증 또는 비상업적인 위험에 대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자국의 투자자에게 지불조치를 할 경우, 다른 쪽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인정한다.

가. 투자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이 그 국가의 법률 또는 적법한 거래에 따라 어느 한쪽 계약당사자 또는 그 계약당사자의 지정기관에 양도되는 것

나. 어느 한쪽 계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대위에 의하여 그 투자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청구권을 집행하며 투자자로서 동등한 정도의 투자 관련 의무를 이행하는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

2. 그러한 권리 또는 청구권의 양도 및 그러한 지불의 양도에 따라 어느 한쪽 계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에게 지불된 지불액에 대해서는 제 4조와 제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 제 8 조

### 계약당사자간의 분쟁해결

1. 계약당사자는 어느 한쪽 계약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 협정과 관련된 분쟁 해결이나 이 협정의 해석·적용 또는 목적 실현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외교 경로를 통하여 신속히 협의한다.

2. 분쟁이 6개월 이내에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이 분쟁은 어느 한쪽 계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특별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

3. 특별 중재재판소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각 계약당사자는 중재재판을 요청하는 서면통지를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1인의 중재재판관을 임명한다. 임명된 2인의 중재재판관은 향후 2개월 이내에 양 계약당사자와 외교관계가 있는 제3국의 국민을 중재재판소의 재판장으로 선임한다.

4. 중재재판소가 중재재판을 요청하는 서면통지 접수 후 4개월 이내에 설립되지 않을 경우 각 계약당사자는 그 밖의 다른 협정이 없다면 국제사법재판 소장에게 필요한 중재재판관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소장이 어느 한쪽 계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 계약당사자의 국민이 아니거나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차상급 재판관에게 필요한 중재재판관 임명을 요청한다.

5. 중재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 중재재판소는 이 협정의 규정과 양 계약당사자가 인정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6. 중재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중재결정은 중재재판소 설립일부터 10개월 이내에 내려진다. 이러한 판결은 최종적이며 양 계약당사자를 구속한다. 중재재판은 어느 한쪽 계약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결정의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7. 각 계약당사자는 자국이 임명한 중재재판관과 중재절차에서의 자국 대표의 비용을 부담한다. 재판장과 재판소 관련 비용은 계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 제 9 조

### 투자자와 어느 한쪽 계약당사자간의 분쟁 해결

1. 이 조의 목적상 투자분쟁은 다른 쪽 계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하여 이 협정상 의무위반 주장으로 인하여 또는 의무위반 주장으로부터 발생한 손실 및 손해를 초래한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투자자와 어느 한쪽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이다.

2. 투자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동 분쟁은 가능한 한 협의와 협상에 의하여 해결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자는 투자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 방안 중 하나에 동 분쟁을 회부할 수 있다.

- 가. 투자가 행해진 국가의 권한 있는 법원
- 나. 어느 한쪽 당사자가 협의하기 위해 분쟁을 제기한 날부터 4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국제 중재

3. 국제 중재의 경우, 분쟁은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의 절차에 회부된다.

- 가. 1965년 3월 18일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 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워싱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
- 나. 국제연합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 또는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된 그 밖의 중재규칙에 따라 설립되는 특별중재재판소

국제 중재에 회부하기 전 분쟁에 관련된 계약당사자는 투자자에게 그 계약당사자의 법률에 따른 국내행정검토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국내행정검토절차는 서류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검토를 위한 신청이 처음 제출된 날부터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4개월 후에도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절차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며, 투자자는 국제 중재에 분쟁을 회부할 수 있다. 투자자는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4개월 간의 협의 또는 협상 기간 동안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각 계약당사자는 당해 투자자에 의하여 투자분쟁의 해결을 구속력 있는 국제중재에 회부하는 것에 동의한다.

4. 투자자가 투자가 행해진 국가의 권한 있는 법원,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 또는 이 조 제3항에 명시된 특별 중재재판소에 분쟁을 회부하면 그 세 가지 절차 중 하나의 선택은 최종적이다.

5. 이 조 제3항에 따라 투자분쟁을 회부하는 투자자는 그러한 회부의 최소 90일 전에 분쟁 제기 의사를 분쟁당사자인 계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러한 통지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한다.

- 가. 당해 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 나. 분쟁당사자인 계약당사자의 논쟁의 대상인 특정한 조치와 위반한 것으로 주장되는 이 협정의 규정을 포함하여 문제를 명확히 제시하는 데 충분한 투자 분쟁의 사실적·법률적 근거에 관한 요약자료
- 다. 필요한 경우 개략적인 배상청구금액을 포함하여 추구하는 구제 조치
- 라. 당해 투자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이 조 제3항 가목 내지 나목에 규정된 분쟁 해결절차

6. 중재판정은 법률의 저촉에 관한 규칙을 포함한 분쟁당사국의 법률, 이 협정의 규정 및 양 계약당사자들부터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을 기초로 한다.

7. 이 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는 투자자가 손실이나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제3항에 따라 분쟁을 회부할 수 없다.

8. 중재 판정은 양 분쟁당사자에게 최종적이며 구속적이다. 각 계약당사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정을 집행할 것을 약속한다.

## 제 10 조 그 밖의 의무

1. 어느 한쪽 계약당사자의 법률 또는 양 계약당사자 간에 현재 존재하는 또는 추후 제정될 국제적 의무가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에 대해 이 협정에 의하여 부여된 것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한다면 그러한 경우는 이 협정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 각 계약당사자는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와 관련하여 발효한 그 밖의 의무를 준수한다.

3.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의 부속서 1다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지원 하에 체결된 그 밖의 국제협정을 포함한 계약당사자가 당사자인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 이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각 계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 안에서 지방정부가 이 협정상의 의무를 준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용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 제 11 조 투명성

1. 각 계약당사자는 다른 쪽 계약당사자 영역 안에 있는 어느 한쪽 계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협정과 자국의 법률·규칙·절차·행정판결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법적 결정을 즉시 공표하거나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되는 경우 법 집행을 저해하거나 기밀사항을 보호하는 자국 법률에 상반되거나 특정 투자자의 합법적인 상업적 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특정 투자자 또는 투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비밀 또는 재산권적 정보를 계약당사자가

제공하거나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  
적 용

이 협정은 어느 한쪽 계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어느 한쪽 계약당사자 투자자들이 동 협정 발효 전 또는 발효 후에 행한 투자에 적용되나, 발효 전에 발생된 분쟁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3 A  
협 의

1. 계약당사자의 대표들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간헐적으로 회의를 갖는다.
  - 가. 이 협정의 이행 검토
  - 나. 법률 정보 및 투자 기회 교환
  - 다. 투자 촉진에 대한 제안 제시
  - 라. 투자 관련 다른 문제에 대한 연구

2. 어느 한쪽 계약당사자가 이 조 제1항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 다른 쪽 계약당사자는 신속하게 응답해야 하며 계약당사자 간 협의는 서울과 북경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제 14 조  
발효, 존속 및 종료

1. 이 협정은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각 계약당사자의 국내법적 절차가 충족되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 날의 다음 달 초일에 발효하며 10년간 유효하다. 어느 한쪽 계약당사자가 다른 쪽 계약당사자에게 이 기간의 만기 1년 전에 이 협정을 종료시키기 위해 서면통지를 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은 다음 10년 동안 자동적으로 연장되며, 그 후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다.

2. 이 협정의 종료일 이전에 이루어진 투자에 대하여 이 협정의 규정은 그 종료일 부터 10년간 계속 유효하다.

3. 양 계약당사자는 계약당사자 간의 서면 협정으로 이 협정을 개정할 수 있다. 모든 개정은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절차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발효된다.

4. 1992년 9월 30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과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은 이 협정이 발효하는 때에 종료되고, 이 협정에 의하여 대

체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7년 9월 8일 시드니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 대한민국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및 일본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원활화 및 보호에 관한 협정

2012년 5월 13일 북경에서 서명

대한민국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및 일본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원활화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및 일본국 정부는,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및 일본국(이하 이 협정에서는 “체약당사자”라 한다) 간 경제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투자를 보다 증진하기를 희망하고,

그 밖의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한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를 위해 안정적이고 유리하며 투명한 여건을 조성하기를 의도하며,

그러한 투자의 상호 증진, 원활화 및 보호와 점진적인 투자 자유화가 투자자의 영업 계획 촉진에 도움이 되고 체약당사자 간 번영을 증대시킨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목표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보건, 안전 및 환경 조치의 완화 없이 달성될 수 있음을 인식하며,

투자자가 투자활동을 하는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발전에 기여하는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투자자가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WTO협정과 그 밖의 다자간 협력문서에서의 그들 각자의 권리와 의무에 유념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1) “투자”란 자본 혹은 다른 재원의 투입, 수익 혹은 이윤의 기대 또는 위험의 부담

과 같이 투자의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투자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종류의 자산을 말한다.투자의 유형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기업과 기업의 지점

나. 지분, 주식 또는 기업에 대한 그 밖의 형태의 자본 참여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

다. 채권, 회사채, 대여금 및 그 밖의 형태의 부채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

라. 완성품 인도, 건설, 경영, 생산 또는 수익공유 계약을 포함한 계약에 따른 권리

마. 투자와 관련하여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계약에 따른 지급청구권 및 이행청구권

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상표, 산업디자인,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식물 신품종, 상호, 원산지 표시 또는 지리적 표시 및 미공개정보 관련 권리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사. 양허, 면허, 인가 및 허가와 같이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부여된 권리

아. 그 밖의 모든 유·무형 재산, 동산·부동산 그리고 리스·저당권·유치권·질권 등의 모든 관련 재산권

주석 : 투자는 특히 이윤, 이자, 자본이득, 배당, 로열티 및 수수료 등 투자에 의해 발생된 금액도 포함한다. 자산이 투자된 형태의 변화는 투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계약당사자의 투자자”란 다른 어떠한 계약당사자 영역 내에서 투자를 하는 계약당사자의 자연인 또는 기업을 말한다.

(3) “계약당사자의 자연인”이란 그 계약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그 계약당사자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을 말한다.

(4) “계약당사자의 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그리고 민간 또는 정부가 소유 혹은 통제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계약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설립 혹은 조직된 모든 법인이나 그 밖의 모든 실체를 말하며, 회사, 주식회사, 신탁, 동업기업, 개인기업, 합작투자, 사단 또는 조직을 포함한다.

주석 :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업의 지점은 그 자체로, 그리고 단독으로 기업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5) “투자 활동”이란 경영, 영업, 운영, 유지, 사용, 향유 및 판매 또는 그 밖의 투자의 처분을 말한다.

(6) “자유사용통화”란 국제통화기금협정에 정의된 자유사용통화를 말한다.

(7) “ICSID 협약”이란 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작성된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 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8) “UNCITRAL 중재규칙”이란 국제연합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중재규칙을 말한다.

(9) “WTO 협정”이란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을 말한다.

(10) “ICSID 추가절차규칙”이란 투자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본부 사무국에 의한 절차행정을 위한 추가 절차를 규율하는 규칙을 말한다.

## 제2조 투자 증진 및 보호

1. 각 계약당사자는 자국 영역 내에서 그 밖의 계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한 유리한 여건을 장려하고 조성한다.

2. 각 계약당사자는 외국인 소유와 통제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에 의하여 다른 어떠한 계약당사자의 투자자의 투자를 허용한다.

## 제3조 내국민대우

1. 각 계약당사자는 자국 영역 내에서 다른 어떠한 계약당사자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에 대하여 투자활동과 관련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신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 제1항은 이 협정 발효일에 각 계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유지되고 있는 현행의 비합치조치가 있다면, 이러한 비합치조치 또는 그 개정 혹은 수정이 개정 혹은 수정 직전에 가진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그러한 조치에 대한 모든 개정이나 수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일단 허용된 투자에 부여되는 대우는 최초의 투자가 행해졌을 당시 부여된 대우보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불리해서는 아니 된다.

3. 각 계약당사자는 제2항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조치를 점진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적용 가능한 경우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한다.

주석: 중화인민공화국은 제2항에 언급된 자신의 조치가 1988년 8월 27일 북경에서 서명된 중화인민공화국과 일본국 간 투자의 촉진과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제3조제2항과 이 협정 의정서 제3항과 불일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 제4조 최혜국대우

1. 각 체약당사자는 자신의 영역 내에서 투자활동과 제2조제2항에 따른 투자의 허용과 관계된 사항과 관련하여 다른 어떠한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제3의 체약당사자 또는 비체약당사자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 제1항은 체약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회원자격에 기인한 어떠한 특혜적인 대우를 다른 어떠한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모든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 통화동맹, 그러한 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에 이르는 유사한 국제협정 또는 다른 형태의 지역경제협력

나. 국경지역에서 소규모 무역을 촉진하는 모든 국제협정 혹은 약정, 또는

다. 항공, 어업 및 구조를 포함한 해양문제와 관련한 모든 양자 및 다자 국제협정

3. 제1항에 언급된 제3의 체약당사자 또는 모든 비체약당사자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에 부여된 대우는 다른 국제협정상 체약당사자와 제3의 체약당사자의 투자자 간 또는 체약당사자와 모든 비체약당사자의 투자자 간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제3의 체약당사자 또는 모든 비체약당사자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에 부여된 대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주석: 이 조의 목적상 “비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일에 세계무역기구의 회원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또는 WTO 협정상 규정된 어떠한 독자적 관세 영역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5조 투자의 일반 대우

1.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어떠한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의 투자에 대해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부여한다.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수용된 국제법상의 규칙에 따라 부여된 모든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우의 기준에 추가적인 또는 이를 넘는 대우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이 협정상 다른 규정 혹은 별도 국제협정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결정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 이 항에 대한 위반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2.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어떠한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하여 맺은 협정 또는 계약 형태의 모든 서면 약속을 준수한다.

## **제6조 법원에의 접근**

각 체약당사자는 자신의 영역 내에서 다른 어떠한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대하여 그러한 투자자의 권리를 수행·변호하는데 있어서 모든 관할단계의 법원, 행정법원 및 행정기관에의 접근과 관련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신의 투자자, 제3의 체약당사자 또는 비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 **제7조 이행요건 금지**

1. WTO 협정 부속서 1가상 무역 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의 규정들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포함되며 이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고 이 협정의 모든 투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2.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자신의 영역 내에서 다른 어떠한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에 대해 수출 또는 기술이전에 관한 이행요건과 관련하여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8조 인력의 입국**

각 체약당사자는 자신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투자와 관련한 사업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자신의 영역에 입국하고 거기에 체류하기를 희망하는 다른 어떠한 체약당사자의 자연인의 입국, 체류 및 거주에 대한 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노력한다.

## **제9조 지식재산권**

1. 가. 각 체약당사자는 자신의 법령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한다.
- 나. 각 체약당사자는 투명한 지식재산권 체제를 구축하고 유지하며 지식재산권

에 대한 기존 협의 기제 하에서 체약당사자 간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협력과 의사소통을 증진한다.

2. 이 협정상 어떠한 규정도 둘 이상의 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인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국제협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상 어떠한 규정도 체약당사자가 각각 자신과 제3의 체약당사자 및 자신과 비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인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협정에 의하여 제3의 체약당사자 또는 비체약당사자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에 부여하는 대우를 다른 어떠한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에 대해 부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제10조 투명성

1. 각 체약당사자는 그 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이며 투자활동과 관련되거나 투자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협정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법률, 규정, 행정절차 및 행정결정 그리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법결정을 즉시 공표하거나 달리 공중이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각 체약당사자의 정부는 그러한 법률, 규정, 행정절차 및 행정결정을 담당하는 권한 있는 당국의 이름과 주소를 공중이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2.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이행 및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도입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법령이 공표되거나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시점과 그것이 발효되는 시점 간에 합리적인 간격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국가안보, 환율 또는 통화정책과 관련한 법령과 공표 시 법의 집행을 방해하게 될 그 밖의 법령은 예외로 한다.

3.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어떠한 체약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기존 양자 채널을 통해, 이 협정 하에서 후자의 체약당사자와 그 투자자의 이익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자의 체약당사자의 모든 실제 또는 제안된 조치와 관련하여 후자의 체약당사자의 특정 질문에 답하고 후자의 체약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4. 각 체약당사자는 자신의 법령에 따라

가. 이 협정에서 다루는 그 어떠한 문제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사전에 공개하고

나. 투자와 관련된 그러한 규정들에 대해 대중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그러한 규정을 채택하기 전에 그러한 의견에 대해 고려한다.

5. 이 조의 규정은 그 어떠한 계약당사자에 대해서도 그 공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밀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가.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 나. 공공 이익에 반하거나 또는
- 다. 사생활 혹은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 **제11조** **수용과 보상**

1. 어떠한 계약당사자도,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영역 내에서 다른 어떠한 계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를 수용 혹은 국유화하거나 수용 혹은 국유화에 상당하는 그 어떠한 조치(이하 이 협정에서는 “수용”이라 한다)도 하지 아니한다.

- 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 나. 비차별적으로
- 다. 국내법 및 국제표준에 따른 적법절차에 의하여, 그리고
- 라. 제2, 3, 4항에 따라 보상하는 경우

2. 보상은 수용이 공개적으로 발표되거나 수용이 발생한 시점 중 더 빠른 시점에서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치에 상응한다. 공정한 시장가치는 수용이 공공연히 미리 알려짐에 따라 발생하는 시장 가치의 그 어떠한 변화도 반영하지 아니한다.

3. 보상은 지체 없이 지급되고 수용이 발생한 시점부터 지급 시점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비율의 이자율을 포함한다. 보상은 유효하게 실현가능하고,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으며, 수용일에 우세한 시장 환율에 따라 투자자의 계약당사자의 통화 및 자유사용통화로 자유롭게 태환된다.

4. 제15조의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수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투자자는 투자자의 사안 및 보상금액에 대해 이 조에 명시된 원칙에 따른 신속한 검토를 위하여 수용을 행한 계약당사자의 법원 혹은 행정법원 또는 행정기관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 **제12조**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보상**

1. 각 계약당사자는 자신의 영역 내에서의 무력충돌 또는 혁명, 반란, 민간 소요와 같은 비상사태 또는 다른 모든 유사한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영역 내에서 투자와 관련하여 손실이나 손해를 입은 다른 어떠한 계약당사자의 투자자에 대해 원상회복, 배상, 보상 또는 그 밖의 모든 해결에 있어서 자신의 투자자, 제3의 계약당사자의 투자자, 또는 비계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 보다 불리하지 않고 어느 것이든 다른 어떠한 체

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대우를 부여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해결수단으로서의 모든 지불은 유효하게 실현가능하고,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으며, 시장 환율에 따라 해당 투자자의 계약당사자의 통화 및 자유사용통화로 자유롭게 태환된다.

### 제13조

#### 송금

1. 각 계약당사자는 자신의 영역 내에서 다른 어떠한 계약당사자의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한 모든 송금이 지체없이 자신의 영역 안팎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송금은 특히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가. 투자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키기 위한 초기 자본 및 추가 금액
- 나. 이윤, 자본이득, 배당, 로열티, 이자, 수수료 및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다른 당좌 계정 소득
- 다. 투자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 매각 또는 청산으로 인한 수익
- 라. 투자와 관련한 대출금을 포함한 계약에 의한 지불금
- 마. 전자의 계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투자와 관련하여 일을 하는 후자의 계약당사자의 인력의 급여 및 보수
- 바.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지불금, 그리고
- 사. 제15조에 따른 분쟁해결로부터 발생하는 지불금

2. 각 계약당사자는 그러한 송금이 각 송금 당일의 우세한 시장 환율에 따라 자유사용통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보장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당사자는 다음과 관계되는 경우 자국 법률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신의성실한 적용을 통하여 그러한 송금을 지연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다.

- 가. 파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
- 나. 증권, 선물, 옵션 또는 다른 파생상품의 발행, 거래 또는 중개
- 다. 범죄 또는 형사 범죄
- 라. 사법절차에서의 명령이나 판결의 이행 확보, 또는
- 마. 통화 또는 다른 화폐 증서의 송금 보고

4. 이 조에 언급된 송금은 다른 어떠한 계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해 투자가 행해진 시점에 효력이 있는 외환관리와 관련한 각 계약당사자의 법령에 규정된 관련 형식요건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형식요건은 다음의 사항에 관련된 것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한다.

- 가. 해외투자

- 나. 청산, 소유권 이전 및 등록된 자본의 감자와 그로부터 파생된 자금의 재투자  
와 관련된 것
- 다. 원금과 등록된 대외부채(해외투자자의 대출 포함) 이자의 반환, 또는
- 라. 국내 보증인들이 제공한 대외 보증

5. 제4항에 언급된 형식요건의 완료를 위해 필요한 기간은 각 송금에 대한 서면 요청서가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1항에 언급된 투자자에 의해 그 영역 내에 그 투자자의 투자가 존재하는 계약당사자의 외환당국에 제출되는 날부터 개시된다. 필요한 승인은 요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약 한 달의 기간 내에 부여되도록 하며, 두 달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형식요건은 이 협정에 따른 계약당사자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

### 제14조 대위변제

1. 계약당사자 또는 그 계약당사자의 지정기관이 자신의 어떠한 투자자에게 다른 어떠한 계약당사자 영역 내에서의 그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하여 배상, 보증 또는 보험계약에 따른 지불조치를 한 경우에는 후자의 계약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한다.

- 가. 그러한 지불의 기초를 구성한 투자자의 모든 권리 또는 청구가 전자의 계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에 양도되는 것을 인정하고,
- 나. 전자의 계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대위변제에 따라 그러한 권리 또는 청구를 투자자의 원래의 권리 또는 청구와 동등한 정도로 행사할 권리를 인정한다.

2. 계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자신의 투자자에게 지불을 하였고 그 결과 투자자의 권리가 개시되었다면, 투자자는 지불을 하는 계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의 동의 없이 다른 어떠한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이러한 권리에 기초하여 청구를 할 수 없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자자는 제1항에 따라 대위변제 되지 않은 자신의 권리를 계속해서 행사할 자격을 가진다.

3. 권리 또는 청구의 그러한 양도 및 그러한 지불의 송금에 따라 제1항에 언급된 계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에게 지급될 지불액에 대해서는 제11, 12, 13조가 준용된다.

### 제15조 계약당사자와 다른 어떠한 계약당사자의 투자자 간의 투자분쟁 해결

1. 이 조의 목적상 투자분쟁은 계약당사자와 투자자 또는 그 계약당사자 영역 내에서 그의 투자와 관련하여 이 협정에 따른 그 계약당사자의 어떠한 의무의 주장되는 위반으로 인하거나 이로부터 발생한 손실 혹은 손해를 입은 다른 어떠한 계약당사자의 투자

자 간의 분쟁이다.

2. 모든 투자분쟁은 가능한 한 투자분쟁의 당사자인 투자자(이하 이 조에서는 “분쟁 투자자”라 한다)와 투자분쟁의 당사자인 계약당사자(이하 이 조에서는 “분쟁 계약당사자”라 한다) 간의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한다. 협의를 위한 서면 요청서는 제3항에 명시된 중재에 투자분쟁을 회부하기 전 분쟁 투자자에 의해 분쟁 계약당사자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서면 요청서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한다.

- 가. 분쟁 투자자의 이름과 주소
- 나. 위반된 것으로 주장되는 이 협정에 따른 의무
- 다. 투자분쟁의 사실에 관한 요약자료, 그리고
- 라. 구제조치와 대략적인 배상금액

주석: 서면 협의 요청서는 다음의 분쟁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 전달된다.

- 가.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우, 상무부 조약법률사
- 나. 일본국의 경우, 외무성 또는 이를 대신하거나 대체하는 실체, 그리고
- 다. 대한민국의 경우, 법무부 국제법무과

3. 투자분쟁은 분쟁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회부된다.

- 가. 분쟁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법원
- 나. ICSID 협약이 적용 가능한 경우, ICSID 협약에 따른 중재
- 다. ICSID 추가절차규칙이 적용 가능한 경우, ICSID 추가절차규칙에 따른 중재
- 라.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 또는
- 마. 분쟁 계약당사자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중재 규칙에 따른 모든 중재

나호에서 마호까지의 목적상 아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1) 분쟁 계약당사자에 협의를 위한 서면 요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4개월 내 제2항에 언급된 협의를 통해 투자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 2) 적용 가능한 경우, 제7항에 명시된 국내행정검토절차와 관련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석: 가호의 목적상 이 항은 적용 가능한 경우, 행정법원 또는 행정기관의 전심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 각 계약당사자는 이로써 이 조의 규정에 따라 분쟁 투자자가 투자분쟁을 제3항에 명시된 중재에 회부하는 것에 동의한다.

5. 일단 분쟁 투자자가 투자분쟁을 분쟁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법원 또는 제3항에 명시된 중재 중 하나에 회부하면 분쟁 투자자의 선택은 최종적이며, 분쟁 투자자는

이후 동일한 분쟁을 제3항에 명시된 다른 중재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6.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언급된 위반을 구성한다고 주장되는 분쟁 계약당사자의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분쟁 투자자가 분쟁 계약당사자의 어떠한 권한 있는 법원에 절차를 개시할 모든 권리의 포기를 서면으로 분쟁 계약당사자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청구도 제3항에 명시된 중재에 회부되지 아니한다.

7. 분쟁 투자자가 제2항에 따라 분쟁 계약당사자에 협의를 위한 서면 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분쟁 계약당사자는 해당 투자자에게 제3항에 명시된 중재에 회부하기 전 그 계약당사자의 법령에 명시된 국내행정검토절차를 거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할 수 있다.

국내행정검토절차는 검토를 위한 신청이 제출된 날부터 4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절차가 4개월 후에도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그것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며, 분쟁 투자자는 제3항에 명시된 중재에 투자분쟁을 회부할 수 있다. 투자자는 제3항에 규정된 4개월의 협의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검토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주석: 국내행정검토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어떠한 결정도 분쟁 투자자가 투자분쟁을 제3항에 명시된 중재에 회부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8. 적용 가능한 중재규칙은 이 조에서 수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3항에 명시된 중재를 규율한다.

9. 제3항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이하 이 조에서는 “판정부”라 한다)에 의한 판정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 가. 분쟁 투자자와 그의 투자에 관하여 분쟁 계약당사자가 이 협정상의 어떠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 그리고
- 나. 분쟁 투자자의 손실 또는 손해가 그러한 위반으로부터 기인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의 구제 방법 중 하나 혹은 둘 모두
  - 1)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 가능한 이자, 그리고
  - 2) 재산의 원상회복. 이 경우 판정은 분쟁 계약당사자가 원상회복 대신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 가능한 모든 이자를 지불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10. 판정부에 의한 판정은 투자분쟁의 양 당사자에게 최종적이며 구속력이 있다. 이 판정은 그러한 판정의 집행이 추구되는 국가의 영역 내에서 효력 있는 판정의 집행과 관련된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집행된다.

11.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분쟁 투자자가 자신이 제1항에 언급된 손실이나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 중 보다 빠른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어떠한 청구도 제3항에 명시된 중재에 회부될 수 없다.

12. 제3항(가호 제외)과 제4항은 다음에 관한 어떠한 투자분쟁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제9조제1항나호에 따른 계약당사자의 의무, 그리고
- 나. 제20조의 범위 내에 해당되는 계약당사자의 조치

## 제16조

### 특별형식요건 및 정보요건

1. 제3조의 어떠한 규정도 계약당사자가 자신의 영역 내에서 다른 어떠한 계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활동과 관련하여 전자의 계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법적인 투자 구성 요건과 같은 특별형식요건을 규정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형식요건은 이 협정과 합치해야 하며, 이 협정에 따른 후자의 계약당사자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에 대해 전자의 계약당사자가 부여하는 보호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제3조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계약당사자는 자신의 영역 내에서 다른 어떠한 계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정보 또는 통계상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의 투자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전자의 계약당사자는 후자의 계약당사자의 투자자 또는 그의 투자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하게 될 어떠한 공개로부터도 그러한 비밀 정보를 보호한다.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계약당사자가 자국법의 공평하고 신의성실한 적용을 통하여 정보를 달리 입수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제17조

###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해결

1. 모든 계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된 그 어떠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어떠한 계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전자의 계약당사자(이하 이 조에서는 “제소자”라 한다)는 요청 시 제3의 계약당사자에게 그 요청서의 사본을 전달한다. 제3의 계약당사자가 그 분쟁에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여길 경우, 그 계약당사자는 그러한 협의에 참여할 자격을 가진다.

- 2. 가. 제1항에 언급된 협의를 통해 그 항에 언급된 요청서 수령일 후 6개월 내에 분쟁이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못할 경우, 제소자 또는 그러한 요청서가 전달된 계약당사자(이하 이 조에서는 “분쟁 당사자”라 통칭한다)는 다른 분쟁당사자에 대한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 중재판정부에 그 분쟁을 회부할 수 있다.
- 나. 가호의 중재판정부에 분쟁을 회부한 분쟁 당사자는 그 호에 따른 중재 요청

서 사본을 제3의 계약당사자에게 전달한다.

- 다. 제3의 계약당사자는 분쟁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한 후, 이 협정의 해석 문제를 가호에 언급된 중재판정부에 회부할 수 있다.
- 라. 제3의 계약당사자가 자신이 분쟁에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여길 경우, 그 계약당사자는 분쟁 당사자와 가호에 언급된 중재판정부에 참여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한 후, 어느 한쪽 분쟁 당사자에 동참하여 중재 절차에 참여할 자격을 가진다. 그러한 서면 통지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나호의 요청서 사본이 전달된 날부터 늦어도 7일 내에는 분쟁 당사자에게 전달된다.

3. 이 조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거나 분쟁 당사자에 의한 반대되는 합의가 없는 경우, UNCITRAL 중재규칙이 중재판정부의 절차에 준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은 분쟁 당사자에 의해 수정되거나 어떤 분쟁 당사자도 수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제4항에 따라 임명된 중재인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스스로 자신의 규칙과 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4. 각 분쟁 당사자는 제2항가호에 따른 요청서 수령일부터 60일 내에 1인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2인의 중재인은 분쟁 당사자와 협의하여 비계약당사자의 국적을 가진 제3의 중재인을 의장으로 선임한다. 3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의 구성원 임명에 적용되는 UNCITRAL 중재규칙은 그러한 규칙에서 규정된 선임권자가 국제사법재판소의 소장이 된다는 조건으로 중재판정부의 중재인 임명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준용된다. 소장이 어떠한 계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달리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소장에게 임명을 요청한다. 부소장도 어떠한 계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달리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 계약당사자의 국민도 아닌 국제사법재판소의 차상급 구성원에게 임명을 요청한다.

5. 분쟁 당사자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제3의 중재인의 선임일부터 180일의 기간 내에 모든 자료가 제출되고, 모든 심리가 종료된다. 중재판정부는 이 협정의 규정과 분쟁 당사자에 적용 가능한 국제법의 규칙에 따라 최종 자료 제출일이나 심리의 종료일 중 보다 늦은 날부터 60일 내에 판정을 내린다. 그러한 판정은 분쟁 당사자에게 최종적이며 구속력이 있다.

6. 제2항라호에 따라 중재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제3의 계약당사자는 분쟁 당사자와 중재판정부에 서면 통지를 한 후 모든 심리에 참석하고, 중재판정부에 서면 또는 구두 의견을 제출하며 분쟁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서면 의견서 사본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7. 분쟁 당사자에 의해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의장 및 그 밖의 중재인에 의하여 소요된 비용 및 그 밖의 절차 비용은 분쟁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 제18조 안보 예외

1. 제12조의 규정을 제외한 이 협정의 어떠한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자신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다음 각 목의 조치

- 1) 전쟁 또는 무력충돌이나 그 밖에 그 계약당사자 내에서 또는 국제관계상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 2) 무기의 확산방지에 관한 국내정책이나 국제협약의 이행과 관련되는 경우

나. 국제평화 및 안보의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자신의 의무이행을 위한 조치

2. 계약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제12조의 규정을 제외한 이 협정의 규정에 따른 의무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계약당사자는 자신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러한 조치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 제19조 임시 세이프가드조치

1.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국제자본거래와 관련된 제3조에 따른 자국의 의무 및 제13조에 따른 자국의 의무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가. 중대한 국제수지 및 대외적 금융상의 어려움에 처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나. 예외적인 상황에서, 자본이동이 거시경제의 운영, 특히 통화 및 환율 정책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언급된 조치는

가. 그 조치를 한 계약당사자가 국제통화기금협정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그 협정과 부합되어야 하고,

나. 제1항에 명시된 상황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 일시적이며 상황이 허락하는 한 신속하게 철폐되어야 하고,

라. 그 밖의 계약당사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즉시 통보되어야 하며,

마. 어떠한 그 밖의 계약당사자에게 제3의 계약당사자와 비계약당사자에게 부여하는 것과 같은 우호적인 대우를 보장해야 하고,

바. 그 밖의 계약당사자의 상업적, 경제적, 그리고 금융상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하는 방향으로 채택 또는 유지한다.

3.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계약당사자가 국제통화기금협정의 당사자로서 향유하는 권리 및 부과되는 의무를 변경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제20조 건전성 조치

1. 이 협정의 다른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당사자는 건전성을 이유로 투자자, 예금자, 보험계약자 또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수탁의무를 부여한 자를 보호하거나 금융시스템의 통합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 금융서비스와 관련한 조치를 하는 것을 방해받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조치가 이 협정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것은 이 협정에 따른 그 계약당사자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지 아니한다.

## 제21조 조세조치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제3, 4, 5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세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떠한 조세협약에 따른 모든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협정과 그러한 모든 협약 간에 어떠한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범위 내에서 그 협약이 우선한다.

주석: 조세와 관련된 사안을 해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있는 조세협약에 따른 각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러한 협약이 그러한 사안을 규율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3. 제11조는 조세조치에 적용된다.

4. 제15조는 제3항에 따른 분쟁에 적용된다.

5. 가. 문제가 되는 조세조치가 나호에 따라 수용이 아니라고 결정된 경우, 어떠한 투자자도 제11조를 제15조제3항에 명시된 중재에 투자분쟁을 회부하는 근거로 원용할 수 없다.

나. 분쟁 투자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분쟁 계약당사자에 서면 협의 요청서를

제출할 때에 그러한 조치가 수용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분쟁 투자자의 체약당사자와 분쟁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사안을 회부한다.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제15조제2항에 따라 분쟁 체약당사자에 서면 협의 요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6개월 내에 그 사안을 검토하지 않거나, 또는 검토를 하였으나 그 조치가 수용이 아니라고 결정하지 못한 경우, 투자자는 자신의 청구를 제15조제3항에 명시된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다. 나호의 목적상 “권한 있는 당국”은 다음을 말한다.

- 1)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우, 재정부 그리고 국가세무총국 또는 그들의 위임대표
- 2) 일본국의 경우, 재무대신 또는 그 위임대표, 다만 이들은 외무대신 또는 그 위임대표와 협의하여 사안을 고려한다. 그리고
- 3) 대한민국의 경우,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또는 그 위임대표

## 제22조 혜택의 부인

1. 체약당사자는 다른 어떠한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인 그 체약당사자의 기업과 그의 투자에 대해, 그 기업이 비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해 소유되거나 지배되고 혜택을 부인하는 체약당사자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협정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가. 그 비체약당사자와 정상적인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나. 그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나 이 협정의 혜택이 그 기업이나 그의 투자에 부여될 경우 위반되거나 우회될 조치를 그 비체약당사자와 관련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2. 체약당사자는 다른 어떠한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인 그 체약당사자의 기업과 그의 투자에 대해 그 기업이 비체약당사자 또는 혜택을 부인하는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해 소유 또는 지배되고 그 기업이 후자의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협정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주석: 이 조의 목적상 “비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일에 세계무역기구의 회원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또는 WTO 협정상 규정된 어떠한 독자적 관세 영역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23조 환경조치

각 체약당사자는 자신의 환경조치를 완화함으로써 다른 어떠한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이를 위하여 각 체

약당사자는 자신의 영역 내에서의 투자의 설립, 인수 또는 확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러한 환경조치를 포기하거나 달리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4조 합동위원회

1. 계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합동위원회(이하 이 조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이 협정의 이행 및 운영에 대한 논의 및 검토, 그리고

나. 제3조제2항과 제3항에 언급된 현행 비합치조치의 범위를 포함한 이 협정과 관련된 다른 투자 관련 사항에 대한 논의

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 협정의 보다 효율적인 기능이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당사자에게 적절한 권고를 하기로 결정을 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계약당사자의 정부대표로 구성되며, 계약당사자의 정부 이외에 논의 될 사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관련 실체의 대표를 초청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자신의 운영 방법을 결정한다.

4. 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총의에 의한다.

5. 계약당사자에 의해 달리 결정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는 1년에 1회 소집한다.

## 제25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른 어떠한 계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대우와 관련한 것을 포함하여 이 협정 발효일에 존재하는 어떠한 양자 투자협정에 따른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양자 협정이 효력을 갖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주석: 계약당사자의 투자자와 다른 어떠한 계약당사자 간에 사안이 제기되는 경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투자자가 이 협정보다 더 유리하다고 여기는 양 계약당사자 간의 양자투자협정을 원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을 확인한다.

## 제26조 제목

이 협정의 조의 제목은 참조의 편리성만을 위해 삽입되었으며, 이 협정의 해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27조 최종 규정

1. 계약당사자 정부는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그들 각각의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한다. 이 협정은 그러한 통보를 마지막으로 받는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협정의 발효 후 10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이 협정은 또한 이 협정의 발효 전에 다른 어떠한 계약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그 계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획득된 어떠한 계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한 모든 투자에 적용된다.

3. 계약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계약당사자는 이 협정 발효 후 3년마다 또는 어떠한 계약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 내에서 보다 투자를 원활히 하고 보다 개방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일반적 검토 및 이행과 운영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4. 계약당사자는 어떠한 계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개정을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경로를 통해 협상을 개시한다. 이 협정은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각자의 법적 절차에 따라 계약당사자에 의해 승인되며,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날 발효된다. 개정은 그 개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 협정에 규정된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계약당사자는 최초 10년 기간의 종료일이나 그 후 어떤 시점에서든 그 밖의 계약당사자에게 1년 전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협정을 철회할 수 있다. 한 계약당사자가 철회하는 경우, 이 협정은 나머지 계약당사자에게 유효하다. 이 협정의 철회일 전에 획득된 투자에 대하여 이 협정의 규정은 그 철회하는 계약당사자에게 그 철회일로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계속 유효하다.

6. 이 협정은 제5항에서 명시된 나머지 계약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그 항에 따라 철회하는 경우 종료된다. 이 협정의 종료일 전에 획득된 투자에 대하여 이 협정의 규정은 그 나머지 계약당사자에게 이 협정 종료일로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계속 유효하다.

7. 이 협정은 협정의 발효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부터 제기되는 청구나 해결된 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5월 13일 북경에서 영어로 3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 의정서

대한민국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및 일본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원활화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서명 당시에 서명인들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다음의 규정에 대해 합의하였다.

1. 이 협정의 제4조제1항은 토지 취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가. 계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제11조제1항이 다음의 두 가지 상황을 다룬다는 데 이해를 같이함을 확인한다.
  - 1) 첫 번째 상황은 직접수용으로서, 명의의 공식적인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를 통하여 투자가 국유화되거나 달리 직접적으로 수용되는 경우, 그리고
  - 2) 두 번째 상황은 간접수용으로서, 계약당사자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명의의 공식적인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 없이 직접수용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 경우
- 나. 계약당사자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특정 사실 상황에서 간접수용을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다른 요소들 중에서 다음의 요소를 고려하는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 조사를 필요로 한다.
  - 1)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의 경제적 영향. 그러나 그러한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투자의 경제적 가치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간접수용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 2)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투자에 기인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하는 정도, 그리고
  - 3) 그러한 행위가 그 목적에 비례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의 성격과 목적
- 다. 계약당사자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그 목적에 비추어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경우와 같은 드문 상황을 제외하고는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으로 계약당사자가 채택한 비차별적인 규제 행위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2년 5월 13일 북경에서 영어로 3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부록 2] 대한민국 투자보장협정 체결 현황

## 대한민국 투자보장협정 체결 현황

2019년 4월 현재 총 94개국 체결(발효 88, 미발효 6)

[외교부]

	지 역	국 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 고
1	구주 지역 (32)	독일	1964.2.4.	1967.1.15.	
2		영국	1976.3.4.	1976.3.4.	
3		프랑스	1977.12.28.	1979.2.1.	
4		덴마크	1988.6.2.	1988.6.2.	
5		헝가리	1988.12.28.	1989.1.1.	
6		폴란드	1989.11.1.	1990.2.2.	
7		러시아	1990.12.14.	1991.7.10.	
8		오스트리아	1991.3.14.	1991.11.1.	
9		이탈리아	1989.1.10.	1992.6.26.	
10		우즈베키스탄	1992.6.17.	1992.11.20.	
11		리투아니아	1993.9.24.	1993.11.9.	
12		스페인	1994.1.17.	1994.7.19.	
13		체코	1992.4.27.	1995.3.16.	
14		타지키스탄	1995.7.14.	1995.8.13.	
15		그리스	1995.1.25.	1995.11.4.	
16		핀란드	1993.10.21.	1996.5.11.	
17		포르투갈	1995.5.3.	1996.8.11.	
18		카자흐스탄	1996.3.20.	1996.12.26.	
19		라트비아	1996.10.23.	1997.1.26.	
20		스웨덴	1995.8.30.	1997.6.18.	
21		벨라루스	1997.4.22.	1997.8.9.	
22		우크라이나	1996.12.16.	1997.11.3.	
23		네덜란드	2003.7.12.	2005.3.1.	1975년 협정 개정
24		슬로바키아	2005.5.27.	2006.2.7.	
25		알바니아	2003.12.15.	2006.5.18.	
26		크로아티아	2005.7.19.	2006.5.31.	

	지 역	국 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 고
27		불가리아	2006.6.12.	2006.11.16.	
28		아제르바이잔	2007.4.23.	2008.1.25.	
29		루마니아	2006.9.6.	2008.1.11.	1994년 협정 개정
30		키르기스스탄	2007.11.19.	2008.7.8.	
31		벨기에·룩셈부르크	2006.12.12.	2011.3.27.	1976년 협정 개정
32		아르메니아	2018.10.19.	미발효	
		터키	1991.5.14.	1994.6.4.	2018.8.1. 종료 자유무역협정 (FTA) 으로 대체
33		아시아 지역 (17)	스리랑카	1980.3.28.	1980.7.15.
34	방글라데시		1986.6.18.	1988.10.6.	
35	말레이시아		1988.4.11.	1989.3.31.	
36	태국		1989.3.24.	1989.9.30.	
37	파키스탄		1988.5.25.	1990.4.15.	
38	몽골		1991.3.28.	1991.4.30.	
39	인도네시아		1991.2.16.	1994.3.10.	
40	라오스		1996.5.15.	1996.6.14.	
41	필리핀		1994.4.7.	1996.9.25.	
42	캄보디아		1997.2.10.	1997.3.12.	
43	홍콩		1997.6.30.	1997.7.30.	
44	일본		2002.3.22.	2003.1.1.	
45	브루나이		2000.11.14.	2003.10.30.	
46	베트남		2003.9.15.	2004.6.5.	1993년 협정 개정
47	중국		2007.9.8.	2007.12.1.	1992년 협정 개정
48	한·중·일		2012.5.13.	2014.5.17.	
49	미얀마		2014.6.5.	2018.10.31.	
50	아프리카- 중동지역 (28개)	튀니지	1975.5.23.	1975.11.28.	
51		세네갈	1984.7.12.	1985.9.2.	
52		이집트	1996.3.18.	1997.5.25.	
53		남아공	1995.7.7.	1997.6.6.	
54		나이지리아	1998.3.27.	1999.2.1.	
55		카타르	1999.4.16.	1999.5.16.	
56		모로코	1999.1.27.	2001.5.8.	
57		알제리	1999.10.12.	2001.9.30.	
58		사우디아라비아	2002.4.4.	2003.2.19.	

	지 역	국 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 고	
59		이스라엘	1999.2.7.	2003.6.19.		
60		오만	2003.10.8.	2004.2.10.		
61		아랍에미리트	2002.6.9.	2004.6.15.		
62		요르단	2004.7.24.	2004.12.25.		
63		이란	1998.10.31.	2006.3.31.		
64		모리타니아	2004.12.15.	2006.7.21.		
65		레바논	2006.5.5.	2006.12.21.		
66		쿠웨이트	2004.7.15.	2007.8.31.		
67		리비아	2006.9.21.	2007.3.28.		
68		모리셔스	2007.6.18.	2008.3.7.		
69		가봉	2007.8.10.	2009.8.9.		
70		부르키나파소	2004.10.26.	2010.4.14.		
71		콩고공화국	2006.11.8.	2011.8.13.		
72		르완다	2009.5.29.	2013.2.16.		
73		케냐	2014.7.8.	2017.5.3.		
74		탄자니아	1998.12.18.	미발효		
75		콩고민주공화국	2005.3.17.	미발효		
76		짐바브웨	2010.5.24.	미발효		
77		카메룬	2013.12.24.	2018.4.13.		
78		미주 지역 (17개)	파라과이	1992.12.22.	1993.8.6.	
79			아르헨티나	1994.5.17.	1996.9.24.	
80			볼리비아	1996.4.1.	1997.6.4.	
81			니카라과	2000.5.15.	2001.6.22.	
82			온두라스	2000.10.24.	2001.7.19.	
83			파나마	2001.7.10.	2002.2.8.	
84			엘살바도르	1998.7.6.	2002.5.25.	
85			멕시코	2000.11.14.	2002.6.27.	
86			과테말라	2000.8.1.	2002.8.17.	
87			코스타리카	2000.8.11.	2002.8.25.	
88	트리니다드토바고		2002.11.5.	2003.11.27.		
89	가이아나		2006.7.31.	2006.8.20.		
90	자메이카		2003.6.10.	2007.11.5.		
91	도미니카		2006.6.30.	2008.6.10.		
92	우루과이		2009.10.1.	2011.12.8.		
93	브라질		1995.9.1.	미발효		
94	콜롬비아		2010.7.6.	미발효		